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신상털기’ 관련 언론 보도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강 인 권

2020년 2월



# ‘신상털기’ 관련 언론 보도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경 호

강 인 권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강인권의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9년 12월

# ‘신상털기’관련 언론 보도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경 호

강 인 권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강인권의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 우 진



위 원

이 서 현



위 원

김 경 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9년 12월



신상털기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거나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일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더 나아가 가공·편집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까지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언론 역시 이러한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를 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에 바탕을 둔 공정한 보도보다는 흥미와 자극성에 중점을 둔 선정적인 보도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정 신상털기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를 쏟아내곤 한다. 실제로 언론사 간 속보 경쟁, 혹은 자극적 기사 작성 경쟁이 보다 심화 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업적 이유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새롭고 자극적인 내용을 추가하게 되고 이러한 경쟁은 빠르게 퍼져나가게 된다. 이런 신상털기 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또는 주변 사람, 또는 전혀 새로운 제3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 외국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한국적인 현상으로서 신상털기 사건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4개의 국내 대표 일간지가 2005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보도한 신상털기 사건 관련 보도의 특성이 언론사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언론사별 신상털기 관련 보도는 선정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신상털기의 선정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언론의 윤리 규범들을 참고하여 내용적 차원의 선정성을 4개의 하위 개념들을 통해 정리하였고, 각 하위 개념별로 3~4개의 세부적인 선정적 보도 항목을 두어 총 14개의 항목으로 선정적 신상털기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신상털기 내용과 선정성 정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그 결과 언론 4사는 모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도유형 역시 신상털기 보도주제와 마찬가지로 언론 4사 모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가장 두드러진 보도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상털기의 가장 큰 문제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꼽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상털기’ 보도는 선정적 측면에서 가장 선정성이 높게 나온 항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히려 신상털기 사건에 대한 분노, 피해자의 오열 등을 그대로 보도하는 항목이 가장 높았다.

신상털기의 특성상 대부분 언론사의 기사들은 신상털기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론사별 신상털기 사건에 대한 차이점과 다른 논조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분석 대상이 되었던 언론사 모두 신상털기의 원인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보도하고 있고, 신상털기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 제3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그동안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이해해 온 신상털기 사건 보도를 내용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언론의 선정적 보도행태를 관찰할 수 있게 된 점, 선정적 신상털기 보도의 한 원인으로 신상털기의 내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선정성, 신상털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 목 차

I.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목적 .....	2
II. 선행연구의 검토 .....	5
1. 신상털기 .....	5
1) 신상털기의 개념 .....	5
2) 신상털기의 실태와 원인 .....	6
2. 신상털기 뉴스 사례와 특징 .....	15
3. 보도의 선정성 .....	17
1) 선정주의의 정의 .....	17
2) 언론보도의 선정성 .....	20
4. 신상털기 관련 언론보도의 선정성 .....	23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29
1. 연구문제 .....	29
2. 연구방법 .....	30
1) 분석대상 및 기간 .....	30
2) 자료수집 및 분석 .....	31
3) 신상털기 보도특성 .....	32
4) 신상털기 행위요소 .....	34
5) 신상털기 관련 언론의 선정적 요소 .....	35
6) 분석유목 .....	37
7) 코더간 신뢰도 .....	38
IV. 연구결과 .....	40
1. 신상털기 관련 언론사별 언론보도 특성 .....	40
1) 기사 유형 .....	40

2) 신상털기 보도주제 .....	42
3) 신상털기 보도유형 .....	43
4) 신상털기 보도태도 .....	46
2. 신상털기 관련 언론보도의 선정성 정도 .....	47
1) 신상털기 행위요소 .....	47
2) 언론사별 신상털기 선정성 행태 .....	49
3) 언론사별 선정성 정도 .....	52
4) 언론의 전반적 선정성 행태 .....	56
<b>V. 요약 및 결론 .....</b>	<b>58</b>
1. 연구결과 요약 .....	58
2. 연구 의의 및 한계 .....	60
참고문헌 .....	63
부록 1 - 기사 코딩 .....	72
부록 2 - 신상털기 선정성 항목별 기사 예시 .....	74
부록 3 - 신상털기 보도 사건 .....	77
부록 4 - 연예인 관련 신상털기 사건 .....	78
Abstract .....	79



# 표 목차

표 1. 선정적 보도에 관한 윤리 규범 및 신상털기 보도 사례 .....	26
표 2. 신상털기에 대한 보도주제 관찰 사례 .....	32
표 3. 신상털기 선정적 보도 분석 유목 .....	36
표 4. 신상털기 분석유목 및 세부 내용 .....	37
표 5. 분석유목 코더 간 신뢰도 .....	38
표 6. 년도별 신상털기 보도 기사 .....	40
표 7. 언론사별 신상털기 보도 사건 .....	41
표 8. 언론사별 신상털기 보도주제 .....	42
표 9. 언론사별 신상털기 관련 기사 보도유형 .....	44
표 10. 언론사별 신상털기 보도태도 .....	46
표 11. 언론사별 신상털기 행위 관련 보도 .....	47
표 12. 언론사별 신상털기 관련 보도의 선정성 항목 이용 현황 .....	49
표 13. 언론사별 선정성 보도 유목 점수 .....	52
표 14. 언론사별 선정성 항목 점수 .....	53
표 15. 언론사별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 .....	55
표 16. 선정성 항목별 평균 점수 .....	56

# I. 서론

## 1. 문제제기

언제부터인가 SNS에서 어떤 잘못을 한 특정인이나 특정 대상의 신원을 밝혀 내고, 모욕과 집단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신상털기’를 자주 등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에 대한 ‘신상털기’가 문제가 되었다면 요즘 SNS상에는 일반인들에 대해 신상을 파헤치는 각종 계정들이 활개를 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신상털기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거나 상식선에서 처벌받을 만한 일일 경우 당사자의 개인 신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SNS를 통해 공유하고 더 나아가 가공·편집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고 정상적인 사회생활까지도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논란이 된 ‘초등학교 교사 제자 성폭행 사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등은 이러한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초등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한 초등학교 교사의 신상털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 공개되어 당사자가 큰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 섬마을 여교사 역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이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고소하는 일까지 생겼고 그 사람은 온갖 비난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또한, 2017년 9월에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우, 언론은 SNS에 먼저 퍼진 피해자의 피투성이 사진 기사에 얼굴만 모자이크한 채로 그대로 사용하고, 폭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입수해 그대로 보도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특정 신상털기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언론사 간 속보 경쟁, 혹은 자극적 기사 작성 경쟁이 보다 심화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노성호·이기웅, 1996).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업적 이유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새롭고 자극적인 내용을 추가하

게 되고 이러한 경쟁은 빠르게 퍼져나가게 된다(이근우, 2012). 이런 신상털기 보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또는 주변 사람, 전혀 새로운 제3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

김수나(2014)는 이러한 신상털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신상털기를 자행한 일부 네티즌들은 본인의 행동이 향후 신상털기 피해자에게 어떤 정신 및 육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는지, 또한 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가해 네티즌 자신조차도 신상털기와 같은 사이버폭력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그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신상털기로 인한 피해가 가상공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공간에까지 이어짐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2차 대상자들에게까지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수나(2014)는 “신상털기는 피해자들에게 자칫하면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육체 및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도 모른 채 범법 행위를 저지를 위험성도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런 사례는 비단 연예인 뿐만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인육수색(人肉搜索)’이라 하여 유사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한국적인 사회현상으로서 신상털기 사건을 언론이 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언론이 SNS상의 신상털기 사건에 대해 어떤 내용에 보다 주목하고 있는지 그 양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2005년 발생한 소위 ‘지하철 개똥녀 사건’은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어 주요 언론사에서 기사화됐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국 블로거 돈 박에 의해 미국에까지 알려졌으며 미국의 주류미디어인 워싱턴포스트에서도 “Subway Fracas Escalates Into Test Of the Internet’s Power to Shame”라는

헤드라인으로 관련 소식을 전할 만큼 미디어의 관심을 받았다.

최근 SNS의 발달로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매체가 지면과 방송에서 PC와 휴대폰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누구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이나 유튜브(Youtube) 같은 개방형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이양환(2012)은 “소셜미디어나 기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처음 올라와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이후 주로 인터넷 언론이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다뤄지는데, 인터넷 이용자의 특성은 기존 전통적 미디어 이용자와 달리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 능동적인 성향을 가진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은 이슈들이 더욱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양환(2012)은 “긍정적 내용이든 부정적 내용이든 상관없이, 능동적 네티즌들에 의한 뜨거운 관심은 결국 전통매체인 TV, 인쇄신문, 라디오 등에서 해당 이슈를 만들며, 대중매체의 막강한 메시지 전파로 인해 전국으로 파급되게 된다”고 하였다. “신상털기는 분명 누군가의 개인 정보를 포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현행 법령에서 ‘신상털기’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sup>1)</sup>하고 있다”(이경주,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런 신상털기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정확한 확인이나 취재 절차 없이 SNS의 내용을 가공 또는 편집하여 보도함으로써 선정적 보도에 일조하는 형태를 보여 왔다.

여러 언론위원회와 언론사에서는 선정적 보도를 경계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 규범을 마련하였다. 발행인·편집인·일선 기자들이 함께 설립한 언론 자율 감시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선정적 보도 금지 조항을 두고 자율적 규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언론사인 KBS나 조선일보, 한겨레 등에서도 내부 가이드 라인에 선정적 보도 금지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임지원, 2019).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정적 범죄 보도는 매체와 채널의 급격한 증가로 언론사 간 경쟁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언론사의 생존전략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유홍식, 2003; 최영재, 2007; 박기묵·김광재, 2014; 김희승,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016). 언론이 특정 신상털기 사건에 대해서 선정적인 보도행태를 보이는 이유로 서배원(2018)은 “온라인 시대의 언론은 빠른 시간에 스쳐 가는 독자의 시선을 낚아채야 하는 것은 물론 독자가 머무는 시간(DT, Duration Time)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선정적 유혹에 한층 더 내몰린다”고 하고, 이재진(2014)은 “언론의 본질은 여론 형성과 권력의 감시·비판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유명인들과 사회적 논란이 된 개인들의 비리와 스캔들을 캐거나 사생활을 추적하는 것을 마치 언론의 본질적 역할인 것처럼 내세운다. 이 과정에 예단과 추측 또는 루머나 SNS에 의존한 보도가 많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상털기’ 사건에 초점을 두고 언론이 어떤 신상털기 사건에 보다 더 주목하여 보도하는지, 어떤 신상털기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 4개 언론사의 기사 특성과 보도주제, 보도유형, 보도태도 등을 살펴보고, ‘신상털기’ 사건의 내용이 신상털기 행위 원인의 한 요소로 기능한다는 관찰 하에 언론이 어떤 신상털기 행위를 주로 보도하고 있고, 보도 내용들의 선정성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의 검토

### 1. 신상털기

#### 1) 신상털기의 개념

인터넷 공간은 다양한 공적·사적 정보들이 생성, 축적, 저장, 그리고 소통되고 있으며,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해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추적·검색되고 있다. 또한, 최근 개인정보의 축적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급에 따라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서이종·손준우, 2011).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웹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구글의 에릭 슈미트의 말처럼 나날이 발전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보호하기 힘든 시기를 맞이했다. 인터넷의 발전이라는 결과물 속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신상털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김수나, 2014).

네이버 사전을 보면 “신상털기는 ‘신상(身上)’과 ‘털기’의 합성어로서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고 위키백과 역시 “신상털기는 ‘신상(身上)’과 ‘털기’의 합성어로 특정인의 신상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찾아내어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사이버 테러의 일종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인육수색(人肉搜索)이라고 불리며, 네티즌들이 온라인 정보 체계를 바탕으로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유포시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져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신상털기란 인터넷으로 특정인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하여, 이를 다시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를 뜻한다. 원래 신상털기는 초기에는 해커의 전유물이었으나 지금은 일반인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SNS를 통해 얼마든지 개

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온라인/인터넷 마녀사냥, 디지털 주홍글씨, 사이버 킬(cyber kill), 사이버 관음증, 네티즌 수사대 등은 모두 신상털기를 설명하는 단어들이다(이경주 2016). 얼마 안 되는 ‘신상털기’ 관련 연구에서 정의된(조동기 외 2001; 김유석 2006; 성동규 외 2006) 신상털기는 “일반적으로 (1) 인터넷 시민들이 특정 사이트를 직접 만들거나 특정 네트워크[인터넷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에 기반을 두고 (2) 특정 개인의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집단적으로 가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이트에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3) 특히 특정 개인의 미니 홈페이지나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특정 사실을 알려서 정서/심리적, 명예 및 관계적, 경제적 피해 등을 가하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서이종·손준우 2011b, 51)로 정의할 수 있다.

## 2) 신상털기의 실태와 원인

### (1) 신상털기와 익명성

보통 익명성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말한다. 익명성의 보장은 긍정적인 측면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익명의 사용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익명을 사용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익명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보다 좀 더 솔직하고 공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컴퓨터 상황에서 나뉘지는 메시지들은 간혹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과 상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백신정, 2011).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상스럽고, 입에 담기 힘든 표현으로 일관된 메시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몇몇 연구들은 사람들이 익명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언사 등과 같은 상스러운 표현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경원, 2000; 윤영철, 2000; 백신정, 2011).

익명성에 숨어 허위 정보를 남발하는 부작용을 잘 보여 주는 사례로 2018년 10월 15일 발생한 ‘김포 맘 카페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인천 서구 드림파크에서 열린 가을 나들이 행사 때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당시 한 시민이 “보육교사가 자신에게 안기려는 원생이 넘어졌지만 일으켜주지 않고 돛자리만 터는 것을 봤다”고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이 단초가 되어 이후 인천과 김포지역 맘 카페에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어린이집 교사의 실명과 사진도 공개됐다. 학대받은 원생의 가족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은 어린이집을 찾아와 원장과 어린이집 교사에게 거세게 항의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 30대 어린이집 교사가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졌다. 어린이집 교사는 맘카페를 통한 과도한 신상털기에 부담이 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고,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학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기 전에 ‘신상털기’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스크린 위의 삶(Life on the screen)」, (1997)의 저자 셰리 터클(Sherry Turkle, 1948~)은 네트의 익명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네트의 ‘나’는 현실 세계의 나와 달리 외부 검열과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자아’들이 모니터에 반영된다.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에 도취되어 물에 빠져 죽은 나르시스처럼 네티즌들은 컴퓨터 모니터에 비친 자기의 이미지를 사랑한다. 모니터 안의 자신은 현실의 나를 뛰어넘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된다. 육체를 동반하지 않는 모니터 속의 ‘나’는 현실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제약받지 않는 자아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현실의 제약 때문에 못하던 행동이나 생각도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이 네트가 열어주는 새로운 검열 받지 않는 정체성의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린 정체성은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검열받지 않는 정체성은 쉽게 익명성으로 전환된다. 익명성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을 괴롭히는 사디즘(sadism)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나르시시즘이 과도하게 발달하면 자신과 다른 상대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과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나를 가리면, 혹은 내가 익명의 다수 가운데



하나로 자리바꿈을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남을 공격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한다. 그래서 네트에서 상대에 대한 포용력과 배려, 사물에 대한 성찰과 자신에 대한 반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맺는 연대와 사랑을 만들어 나가기 어렵다”(네트워크 사회문화, 백옥인, 2013. 2. 25).

익명성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능하게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평소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해체시키는 탈억제 현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몰개성화 논의에 의하면, 익명성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또한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여 더 과격한 행동을 하게 하고 반규범적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고 본다(Kiesler et al. 1984; Postmes and Spears, 1998). 실제로 국내연구에서도 이성식(2005b)은 평소 익명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주위 사람들을 덜 신경 쓰고 그리고 내적 통제가 약하게 되어 사이버범죄를 더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밝힌 바 있고, 유상미와 김미량(2011)은 익명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규범의식이 약하고 또한 왜곡된 정체성으로 인해 사이버폭력을 더 저지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최근 SNS상의 범죄연구에서도 익명성이 주요 설명요인의 하나가 된다(이성식, 2013)고 하듯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신상털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익명 상황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활발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탈적 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다(최재영, 2016)고 하였다.

술러(Suler, 2003)는 사이버 공간 내 익명성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도덕적 구속력이 적어져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양성적 탈억제성 효과’(benign disinhibition effect)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불

때, 개인의 정체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현실 세계에 비해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각종의 ‘악성적 탈억제성 효과’(toxic disinhibition effect)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익명성의 탈억제성 효과는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자아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케 해 주지만 역기능적 측면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이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무법천지’가 아닌 ‘익명천지’라는 냉소를 받게 되었다(류승하, 2005).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신상정보의 공개는 물론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그로 인한 개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물론 엉뚱한 제3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익명성은 인터넷상의 신상털기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며, 신상털기 억제 혹은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익명이 아닌 상황보다 익명의 조건에서 더 신상털기에 가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신상털기와 공분의 정도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공분’이라 하면 ‘공적(公的)인 일로 느끼는 분노’로 인용된다. 주로 인터넷상에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자신의 SNS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노출시키는 행위로 보통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언급된다. 하지만 공분의 정도에 따라 어떤 사건들은 본래의 의미가 퇴색됨은 물론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반사회적 행위를 응징하려는 본래의 의도대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적인 분노와 불의를 참지 못하는 기질이 왜곡된 형태로 인터넷상에서 표출되고 있다.

2011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67%가 신상털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신상털기 참여 경험자 중 95%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 신상정보를 찾아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손영동의 Cyber 안전 빛과 그림자」 “윤일병 가해자 ‘신상털기’ 공분인가, 테러인가”에서 공분의 정도에 따른 신상털기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SNS를 통해 쉽게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렇게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로 신상털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신상털기에서 상대의 프라이버시는 공분의 정도에 따라 사회정의 실현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거의 목살되기 일쑤며, 그로 인한 책임이나 사회적 과장 등은 익명성과 비대면성 속에서 실종되고, 결과의 정당성만 강조하면서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 된다. 신상털기를 당한 사람은 자신의 비난 가능성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물론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털려 온전한 사회생활이 불가능함은 물론 ‘인격 살인’ 수준의 수치스러움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다. 죄책감을 수반하기에 앞서 압박감·불안감·우울감 등 정서적 불안이 엄습해 개인의 능력으로 대처하거나 견디기 곤란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중략)- 여느 때 같으면 심하다는 이야기도 나올 법한데 대다수 시민들의 공분(公憤)에 묻히는 분위기다. 폭행·추행, 집요한 괴롭힘으로 극도의 잔인성을 보여 준 가해자들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집단적 의식이 불법적 신상털기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 셈이다” (이코노믹리뷰, 손영동, 2014. 8. 14).

또 하나 신상털기와 공분의 정도를 잘 보여 주는 사건은 2013년에 있었던 포스코 상무 라면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인천을 출발해 LA로 가는 비행기에서 대기업 임원이 항공기 승무원에게 라면 맛을 트집 잡아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한 인터넷신문에서 보도한 이 사건은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를 차지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임원이 도대체 누구냐 라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사진과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누군가에 의해’ 제공되고, ‘누군가에 의해’ 셀 수 없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었다. 임원이 근무하는 회사는 어디이며,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며, 얼굴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해당 임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가 이어졌고 결국 그 대기업의 임원은 해고되었으며, 사건은 일단락 지어졌다. “권력을 가진 이가 그렇지 못한 이에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분노한 수많은 이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그 분노를 결집시켰고, 그 분노의 표출에 있어서 신상털기가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대상이 명확하게 있어야 분노의 결집과 표출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최항섭, 2013).

미셸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도스트예프스키의 소설을 인용하여 마녀사냥을 “사람들이 자신의 커먼센스(양식)를 확인하기 위해 부정확한 이웃을 불태우는 행사”라고 정의하였다. 2005년 여름 이른바 ‘지하철 개똥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주인공은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떠났다는 이유로 공공의 표적이 되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네티즌이 그녀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자마자 공공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그녀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법의 잣대로만 따진다면 그녀는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했을 테고 따라서 일정한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법이 아닌 인터넷 여론에 의해 그녀는 하나의 거대한 감옥에 갇힌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의 신상털기가 공분에 대한 정도에 따라 퍼 나르는 행위가 급속도로 번지고 잘못을 저지른 자를 징벌한다는 식의 ‘대중 재판적 상황’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신상털기는 하나의 범죄행위 혹은 문제가 있는 행위로 인식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내리는 정당한 처벌’로 인식되고 있다. 최항섭(2013)의 ‘신상털기로 본 한국의 인터넷 문화’에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가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공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누군가를 반드시 알아야 처벌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때 신상털기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의 분노에 대한 처벌이 권력에 의해 의심되고 축소된다는 의심이 있을 때 오히려 공권력을 믿기 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서로 협력하여 그 누군가에 대한 신상을 파헤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덜어주는 합당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결국 제도권을 믿고 맡겼다면 강자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결 났을 것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였기에 이는 사회적 공익에 크게 기여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고, 분명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처벌을 대신 내리고 싶다는 마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비난받을 일을 한 사람의 모든 사생활을 캐내어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또한, 잘못

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가 공개된다면 죄 없는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3) 신상털기와 SNS의 발달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어이다. “소셜(social)”은 사회라는 뜻으로 ‘사람들의 집합’의 의미이다. ‘네트워크(network)’는 정보전달을 위한 전산 시설 간 형성된 체계를 말한다. 소셜(social)과 네트워크(network)라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라는 용어는 인간들이 연결된 관계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김창섭, 2010).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란 용어는 1954년 Barnes가 만든 것으로, 개인 혹은 국가 간 다양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SNS는 소셜네트워크를 온라인에서 구현해주는 인터넷 서비스이고, 1인 미디어 및 1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여 온라인상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이다(원옥연, 2009). 그러므로 SNS는 오프라인의 사회적 관계라는 개념을 온라인으로 옮겨서 개인의 일상과 생각, 감정 등을 타인과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인맥을 넓히는 네트워킹을 도와주는 인터넷 서비스라고 이해할 수 있다(원옥연, 2009).

SNS는 PC 기반의 인터넷 환경에서 시작되었으나, 2000년대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더욱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개인이 온라인 접속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없애고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었기 때문이다(정수영, 2019).

SNS의 특성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2009)은 “SNS는 인터넷 기반으로 개인 간 연결, 정보의 공유, 인맥 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SNS는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된 개인들 간의 교류 공간이며, 온라인 소셜네트워크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고 지원하는 플랫폼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SNS는 네트워크 공개 여부, 사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지식 공유 서비스 등으로 SNS 서비스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나종연, 2010).

종합해보면 결국 SNS는 네트워킹과 커뮤니케이션에 활용되는 인터넷 서비스로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 및 관계 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뉴스 등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소비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2018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의하면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65.2%가 최근 1년 이내에 SNS를 이용하였으며, SNS 이용률은 20대가 91.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30대가 84.9%, 40대가 74.5%, 50대가 55.2%로 전년 대비 증가하여 거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보편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등으로 대표되는 SNS는 자신의 프로필을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자기 노출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이용자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기분이나 현재 상황을 글, 사진, 동영상 등으로 SNS에 올려 이를 타인과 공유할 수 있고, 자신과 관계를 맺은 타인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모습과 상당 부분 닮아있다고 말한다.

SNS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어 하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해지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마주치게 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얼굴 혹은 신체 사진이 도용되어 제 3자에 의해 타 사이트에 게시될 경우, 의도치 않은 악플을 받거나 오해를 사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최예나, 2016).

신상털기 현상의 원인 중 중요한 기술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동안 정보 제공의 수동적 수신자였던 일반인을 정보 생산의 주체로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제도권에서 사회적 부도덕 및 부정의에 대한 단죄를 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자 ‘네티즌 수사대’가 발달 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려는 시도 중 하나가 바로 ‘신상털기’ 현상이다

고재열(2011)은 “대안 미디어 발달과정에서 파생된 역효과에 대한 고찰”에서 네티즌들의 과도한 정의감은 주류 사회와 주류 언론에 의해서 사회정의를 구현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전제하고, 조금이라도 비판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면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온라인 마녀사냥으로 못매를 맞았다고 했다. 현대인들은 신상정보 공개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SNS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신상털기는 기술적으로 정보 주체 본인도 원치 않은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공유되거나 원치 않는 범위까지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신상털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기반이 과연 인터넷이나 SNS 자체의 문제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SNS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SNS 자체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이진규(2011)는 “신상털기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 “신상털기의 방식과 관련하여, SNS는 서비스의 성격상 쉽게 접근 가능한 프로필이나 타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사적 정보로 인해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애당초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하여 검색어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포털 본연의 기능이나, 개인 프로필을 기반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SNS가 비판을 받는 것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어 보인다”라고 주장하며, “신상털기와 관련하여 포털이나 SNS 등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쏟아지는 비판은 해당 서비스들의 ‘기능’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한 것에 기초한 주장이다.

실제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신상털이범들의 ‘의도 및 목적’에 대한 분석, 즉 네티즌들의 행태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그 원인이 논의되어야 한다. 신상털이범들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들의 행태에 대한 계도에 중점을 둔 개선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성식(2018)은 인터넷 시대에서 참여와 공유로 대표되는 신상 공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며 개인이 처음부터 정보를 올리지 말았어야지 하는 시각도 있고 그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의견표현이라는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신상털기는 범죄사건의 수사에 여러 시민들의 제보로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신상털기는 분명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행위이며

그것은 개인정보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노출되거나 왜곡된 사실이 사실인 양 유포되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부정적 행위라는 시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이 신상털기를 더욱 부추키는 원인이 되는지는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하지만 신상털기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파급력은 가히 대단하다 할 수 있겠다. 전달되는 내용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하급수적으로 파급시키는 데에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연관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 2. 신상털기 뉴스 사례와 특징

‘신상털기’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은 2005년 개똥녀 사건을 시작으로 ‘○○녀’, ‘○○남’ 등으로 불리면서부터이다. 신상털기 행위에 대한 논란은 황색저널리즘에 의존한 매체들이 보도 경쟁을 하며 언론사들에게 이른바 좋은 ‘먹잇감’으로 제공되고 있다.

언론이 신상털기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단지 ‘이슈’라는 이유만으로 제보자들의 글만을 기사화하면서 마치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공개를 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해당 기사는 점점 확대 재생산 되었고 진실은 묵인된 채 퍼져나갔다. 속보 경쟁에 치우친 언론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일단 보도하고 보면서 문제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신상정보의 내용은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양환(2012)에 의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언론이 비정상적인 취재형태, 즉 구독 수, 클릭 수, 조회 수, 시청률 등만을 고려한 언론의 선정주의를 추구하는 성향일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개인의 신상을 여과 없이 노출시키는 행태가 소셜미디어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TV나 신문 등 이른바 전통 매체의 경우에도 사건, 사고와 연루된 개인들의 실명과 사진, 학교, 개인적인 취미, 직장 및 직책, 병력, 가족관계, 심지어는



전과기록까지 그대로 노출시켜 이슈를 만들고 재확산을 시키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신상정보의 공개는 이전에 비해 훨씬 그 범위나 강도가 넓고 강하며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불분명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없이 덧붙여져 확산됨으로써 그 결과가 ‘인격 살인’의 수준을 넘어 자살 충동에 이르게까지 하는 등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양환(2012)은 “취재의 기본인 사실 확인도 없이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사건, 사고를 그대로 인용, 보도함으로써 사건과 연관된 개인의 피해를 더욱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성, 객관성, 균형성, 그리고 사실 및 인과관계 확인과 주변 정황에 대한 취재 없이 소셜미디어와 언론 보도가 결합하여 보호받아야 할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 확산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주체를 찾기가 어렵고, 그 주체를 찾는다 하더라도 개인이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하였다.

언론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이며 자유주의에서 책임 있는 언론이 될 수 있는 필수적인 요건(임태섭, 1993)이다. 그러나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배경속에서 언론 매체에 의해 선택되고 해석되는 것이 뉴스이기 때문에 언론이 생산해내는 보도는 언제나 공정성이 결여될 확률이 더 크다.

터크만(Tuchman)이 <메이킹뉴스>(1978/1995)에서 뉴스를 ‘세계를 향해 나 있는 창’이라고 규정했듯, 뉴스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구성된 현실 (constructed reality)’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Tuchman, 1978, 1995; 강진숙, 2016). 뉴스는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배제, 강조와 요약 등을 통해 어떤 것을 포함시키고 무엇을 제외할 것인가, 무엇을 전경화 (foregrounding)시키고 무엇을 배경화(backgrounding)시킬 것인가를 결정하여 사회현실을 구성하고 특정이슈를 재생산 한다(임양준, 2010; Fairclough, 1995, 2004).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살펴보면 그 안에 존재한 담론이 사회와 세계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고, 페쇠(Michel Pêcheux)가 주장했듯 이를 통해 특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보도의 선정성

#### 1) 선정주의의 정의

언론학계에서의 선정성, 혹은 선정주의(sensationalism)는 19세기 초 페니 프레스와 19세기 말 황색저널리즘의 등장과 함께 쓰이기 시작한 개념이다(임지원, 2019). 주로 정치 엘리트나 상인을 독자로 삼는 정파신문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1830년대, 상업적 대중신문인 ‘페니 신문(Penny Press)’이 등장하며 미국 저널리즘의 혁명기를 맞았다(강준만, 2014). 당대 6페니였던 정파신문 가격의 1/6인 페니 신문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구독료를 책김과 동시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해 인쇄비용을 보전했다. 6페니 신문이 정치 사실과 하역정보, 유럽 정세 등을 다루었다면 페니 신문은 이 외에 도시의 사건 사고와 유명인에 대한 가십을 추가로 전달하며 독자의 흥미를 끌었다.

이 시기 일어난 ‘황색신문 경쟁’은 미국의 신문재벌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William Randolph Hearst)가 1896년 <뉴욕저널>을 인수해 조셉 풀리처(Joseph Pulitzer)의 <뉴욕월드>에 도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풀리처(Pulitzer)의 <월드>지 일요판인 <선데이월드>지에 게재된 인기 만화 ‘노란 꼬마(Yellow Kid)’의 작가 리처드 펠튼 아웃 콜트(Richard F. Outcault, 1863~1928)를 자신의 <선데이저널>에 데려와 ‘노란 꼬마’를 연재했다. 그러자 풀리처(Pulitzer)의는 새로운 만화가를 고용해 계속 ‘노란 꼬마’를 그리게 함으로써 두 신문 사이에 ‘노란 꼬마’ 경쟁이 붙었다. 이를 두고 <뉴욕프레스>의 편집국장 어빈 워드맨(Erwin Wardman)은 “끔찍한 사건과 스캔들을 이용하는 두 신문의 방식을 가리켜 ‘황색 언론(yellow press)’이라 불렀는데, 이게 바로 ‘황색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다”(박술, 2018).

당시 신문들이 경박하고 사소한 내용, 상스럽거나 가짜 내용, 특히 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행태, 혹은 공격적 어조를 사용하는 행태 등(Kleemans and Vettehen, 2009)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특히 19세기에 신문 가격이 내려가면서 신문사는 범죄를 강조하거나 큰 활자를 이용하거나 삽화 비율을 확대시키거나 사건을 지나치게 극적으로 그리는 등 선정적 전략들을 이용하여 보

다 많은 저소득층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황색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은 선도자로서 다른 미디어에도 선정주의를 확대시켰다(Kaplan, 2008). 즉 선정주의는 언론사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각 언론사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국가들에서 뉴스 프로그램들 간 경쟁의 심화가 뉴스 프로그램의 선정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Vettehen et al, 2006; Vettehen et al, 2010; Wang, 2012).

임지원(2019)은 “다른 많은 사회과학적 개념처럼 선정성 역시 연구자 간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뉴스를 제외한 교양이나 오락물에서 선정적이라는 표현은 주로 ‘성적(sexual)’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다”고 하였고, 일반적으로 “선정주의는 범죄, 폭력, 재앙, 기문과 관련된 기사에 인간의 감성적 혹은 원초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양진웅·김경호, 2006).

한국방송진흥원(2000)은 선정성을 ‘성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동작이나 과도한 출연자의 노출, 성적인 신체 접촉 등 성(sexuality)과 관련된 표현’으로 정의한다. 방송에서는 ‘성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동작이나 과도한 출연자의 노출, 성적인 신체 접촉 등 성(sexuality)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해석하며, 이를 프로그램의 심의나 평가 잣대로 사용해 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뉴스 보도에서의 선전성은 단순히 성(性)과 관련된 것으로만 국한 시키지 않는 것이 통념이다.

한국방송진흥원(2002)은 “텔레비전 뉴스의 선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타 프로그램에 적용되던 선정성 개념을 보다 폭 넓게 해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좁은 의미에서 선정성의 기준은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거나 성을 지나치게 흥미화하고, 상품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가’를 일차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TV 뉴스의 선정성은 이러한 좁은 의미의 선정성을 넘어, 뉴스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에 대하여 지나친 감정적 표현이라는 차원까지 확대해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넓은 의미의 선정성은 ‘프로그램 내용이 특정 의미를 극도로 강조하고 도덕적, 심미적 감성을 자극하여 실제의 사실보다 흥미롭고 중대한 것처럼 윤색하고 과장하는 일련의 제작 태도 혹은 프로그램의 표현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정성에 대한 넓은 의미의 정의는 ‘수용자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언론 상품의 특성을 아우르는 이론적 개념(Kleemans& Vettehen,2009)’이나 ‘시청자의 주목 혹은 흥분을 유발할 가능성을 가진 메시지의 내용적 혹은 형식적 특성(Grabe, 1996)’과 같은 해외 학자의 정의와도 일맥상통 한다”(임지원, 2019).

선정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감정이나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성질’을 말한다. 방송에서는 선정성이라고 할 때 불필요한 욕정(lascivious)을 불러일으키거나, 어떤 상황을 앞뒤 상황에 맞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이용해 특별한 감정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말한다(박주현, 2014).

구본영(2012)은 온라인 저널리즘의 선정성 문제가 심각한 이유에 대해 신문사들이 온라인 버전인 닷컴 신문은 뉴스 유료화에 실패하면서 노출 빈도에 연동하는 소액의 광고 이외엔 별다른 수익모델이 없는 것을 꼽았다. 여기에 뉴스 선택권이 종전과 달리 공급자인 기자나 언론사가 아니라 네티즌이 쥐고 있기 때문에 클릭 수나 페이지 뷰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 연성뉴스를 전진 배치하고 물고기(네티즌)를 낚는 떡밥처럼 낚시 제목을 다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진(2014)은 언론 보도의 선정주의는 저널리즘의 늪이라고 했다.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빠져들게 되는 수렁과 같은 것이다. 새로운 언론일수록 그리고 취약한 언론일수록 그러한 유혹이 강해지는데, 온라인 저널리즘의 시대에서 무수히 난립하는 언론 매체들은 선정주의에 쉽게 빠져 언론윤리에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

김옥조(2004)는 선정적인 보도를 알파카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고 저속한 호기심에 입맛을 맞추어 구독자를 늘리고 시청률을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윤추구라는 사주의 기업적 관심에 봉사하기 위해 동원된 보도 경향으로 보았다.

이 외에도 최영 등(2009)은 기사 제목이나 내용이 독자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욕망을 자극할 만한 요소를 담고 있는 경우 ‘선정적’이라고 말했다. 윤영철(2007)은 “포털 사이트의 뉴스들은 사이트의 방문자나 기사의 클릭 수가 광고수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네티즌들의 관심과 눈길을 끌기 위해 흥미 위주의 기사와 선정성이 가미된 제목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뉴스 이용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본 연구는 그레이브 등(Grabeetal, 2001)이 제시한 선정주의에 대한 정의를 가장 포괄적인 정의로 사용한다. 선정주의에 대한 정의의 핵심은 ‘이용자에게 주목

과 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주어지는 자극'이라는 점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정주의 혹은 선정성의 개념을 '이용자에게 주목과 각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주어지는 자극'으로 명명하고,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 2) 언론보도의 선정성

언론의 선정주의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 되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논의가 선정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국(2007)은 뉴스를 “한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혹은 가져야만 하는 이슈라고 정의할 때, 언론 매체의 모든 편집행위는 작든 크든 대중의 주목과 관심을 이끌어 내려는 선정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용국(2012)은 “선정주의 언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대중의 주목과 관심을 끄는 데만 치중하느라 사안의 본질이나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지엽적인 부분을 확대하거나 과장하기 때문이다”고 하였으며, 이경자(1994)는 “범죄 보도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왜’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점에 더욱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재진(2004)은 “사건의 묘사도 사건 현장 및 피해자 그리고 범행 수법에 대해 대단히 자극적이고 자세하다 못해 선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물론 선정성에 관한 자율 규제와 마찬가지로 폭력성을 강조하는 보도를 지양하고자 하는 언론계의 자성적인 노력도 존재한다. 방송의 경우, 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지표 종합보고서(1994, 1999)에 의하면 텔레비전 폭력의 형태를 언어적 폭력(욕설, 헐박, 비속어, 불경어), 신체적 위협(도구사용 여부 관계없이 모두 포함), 신체적 폭력(폭행, 멍살 잡기, 감금, 납치 등), 도구사용 신체적 폭력(총, 칼, 각목 등 사용), 대물 폭력(재산 파괴, 방화, 폭발, 가택 침입)으로 분류하고 보도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문의 경우, 신문윤리강령(신문윤리실천요강, 신문소설심의기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를 실천해왔다. 예를 들어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 3조 보도준칙의 3항에서 ‘선정 보도의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

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국신문윤리위원회, 2009).

그러나 이러한 자율 규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있어서 선정성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김훈순, 2004; 박허식, 1986; 한국여성민우회, 2008; 민주언론시민연합; 2012). 이러한 선정주의의 문제는 방송에서, 특히 보도 프로그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여 문제점으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시청률 경쟁과 상업적 목적을 위해 점점 더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언론 보도의 선정성을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변인정·정용국, 2012; 김세중·정용국, 2014). 하나는 성적(sexual) 혹은 음란성으로 좁게 해석하는 경우로서, 이는 교양이나 예능 프로그램 등 뉴스 이외의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석이다. 예를 들면, 선정성을 ‘성적 욕구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물의 속성(송경희, 1997; 김세중, 2016)’, ‘성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동작이나 과도한 출연자의 노출, 성적인 신체 접촉 등 성(sexuality)과 관련된 표현(한국방송진흥원, 2000)’, ‘성적인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적 언어적 표현(하승태·박범길·이정교, 2010)’이라고 정의하는 시도들이다. 뉴스의 선정성을 음란성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흔히 성범죄 보도나 스포츠 연예 관련 보도처럼 보도 자체에 성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들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최근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뉴스로 보도한 몇몇 매체들은 여성 대상 범죄를 마치 포르노처럼 성적인 면에서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여성 대상 범죄 그 자체가 가지는 사안의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자극할 만한 성적인 내용을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소재들과 함께 침소봉대하여 보도했다.

또 다른 하나는, 음란성을 넘어 시청자에게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감정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시도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선정성을 정의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킬리만스와 동료들(Kleemans & Hendriks Vettehen, 2009)은 뉴스 선정주의를 ‘수용자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언론 상품의 특성을 아우르는 이론적 개념’이라고 정의하며, 또한 그레이브(Grabe, 1996)는 ‘시청자의 주의 혹은 각성을 유발할 가능성을 가진 메시지의 내용적 혹은 형식적 특성’이라고 정의한

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기존 연구들은 뉴스의 내용적 특성과 형식적 특성이 모두 시청자에게 선정성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먼저 뉴스 보도가 가진 내용적인 선정성은 자극적인 이슈(범죄, 사건 사고, 스캔들, 성 관련 뉴스), 자극적인 사진, 개인사에 대한 보도, 일반인과의 인터뷰, 인간적 흥미와 같이 보도되는 사건이나 이슈 자체가 가진 자극성이 포함된다. (Kleemans & Hendriks Vettehen, 2009). 예를 들어, 2016년 5월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정신병의 일종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강남역에 있는 한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자신이 제압하기 쉽고 살인이 용이한 상대를 물색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살인을 벌인 사건이다. 이는 그가 자신과 관계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원한 관계의 인물을 그 살인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대상을 살인의 목표로 세운 점 그리고 그 대상을 물색하고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지능적으로 자신이 다루기 힘든 남성은 지나치고 체구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고 엽기적인 살인을 벌였다는 점 그리고 참혹한 사건 재연 현장이나 살인자의 자극적인 인터뷰 등 뉴스가 다루는 내용 그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선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뉴스가 보도하는 사건이나 이슈의 특성과 무관하게, 뉴스를 포장하고 전달하는 형식적 특성 또한 선정성을 강화 시킬 수 있다. 특히 TV 뉴스의 경우, 동영상 편집이나 카메라 기술, CG 등을 사용하여 전달할 정보를 좀 더 자극적으로 내보내 선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5월에 발생한 ‘중학생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방송국의 보도형태를 사례로 들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이 뉴스를 전달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삽화와 재연을 통해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특정 장면과 멘트에서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모텔 외관 및 내부 등을 보여 주는 등 시청자가 그 내용을 더욱 더 자극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구성하여 내보냈다는 점이 그러하다. 또한 2016년 5월에 발생한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헤럴드경제>는 이 사건을 온라인 기사로 전하면서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시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sup>2)</sup> 기사의 제목은 ‘만취한 20대 여교사 몸 속 3명의 정액...학부형이 집단 강간’

2) 한겨레신문(2016. 06. 09.), 언론중재위 ‘집단 성폭행사건’ 선정정보도 <헤럴드경제> 시정권고 검토,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47484.html>

이었다. ‘만취한 20대 여교사’라는 표현을 써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서술했고, ‘3명의 정액’도 선정적인 문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 심의 기준 제1장 4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 2항을 보면,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제2장 12조 ‘범죄 묘사’를 보면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거나 범죄 행위를 미화하는 수단으로 묘사하여서는 안 되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등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독자나 시청자가 언론에 선정적으로 보도된 범죄 관련 내용을 접하면 불안감을 갖게 돼 공익이 저해되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박진우(2011)는 “선정적 보도란 이슈의 중요성 그 자체보다는 이슈를 둘러싼 수많은 ‘비본질적’ 측면들(가십, 루머, 사생활 등)에 주목하는 언론 보도의 심각한 ‘불일치’ 양상을 가리킨다. 이는 결국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에 있어 심각한 장애(bias)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언론 보도에 있어 선정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란성이나 성적(sexual) 표현을 넘어 시청자에게 주목과 흥분을 일으키는 뉴스의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변인정·정용국, 2012; 김세중·정용국, 2014)의 주장에 근거하여, 시청자를 자극시키려는 내용 및 형식적 특성 모두를 선정성의 유발요인으로 정의한다.

#### 4. 신상털기 관련 언론보도의 선정성

신상털기는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기사 거리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사를 더욱 흥미롭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가미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끄는 기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치 중 가장 확실한 것이 보도의 선정성을 증대



시키는 것이다(노성호·이기웅, 1996).

2004년 12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소셜미디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성폭행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여자친구까지 무차별 신상털기가 이루어졌고, 가해자가 아닌데도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까지 확대되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경찰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한 최초 보도에서 피해 여중생의 성(姓)과 사는 곳을 노출, 신중치 못한 보도로 질타를 받은 것 등은 언론이 충분히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일단 보도부터 하고 보자는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신상털기 관련 언론보도의 선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초등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사건’이다. 2017년 8월에 발생한 일명 ‘경남 여교사 초등 제자와 성관계’ 사건은 30대인 모 초등학교 여교사 스무살 차이 나는 6학년 초등학교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건으로, 사건이 보도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교사의 신상을 추적하는 게시글들이 이어지고, 초등학교 여교사와 피해자인 초등학생의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유출되어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

국내 대부분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의 선정성을 부각하고 여교사 중심의 시각에서 사건을 묘사한 데 반해 피해 초등학생의 심정이나 그가 받은 충격에 대해 우려하거나 그의 미래를 걱정하는 내용의 기사는 쓰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여교사 본인의 처벌은 차치하고라도 피해자인 초등학생에 대한 신상정보 노출과 비난은 흥미 위주의 보도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2016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언론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1위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태도, 2위가 권력과 유착된 보도 태도, 3위가 전체 국민의 입장보다 언론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보도 태도, 그리고 4위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언론이 보다 더 흥미롭고 보다 더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은, 언론이 사회 내에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도

3)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년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통계표’, <http://www.kpf.or.kr/site/kpf/ex/board/View.do?cbIdx=248&bcIdx=18356>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다(노성호·이기웅, 1996; 문선아, 2015). 선정 보도는 언론사들이 시청률이나 클릭 수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대중의 관심이 몰려있는 사건이 생기면 크기에 상관없이 자극적인 부분만 확대 재생산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황색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 황색 언론들은 ‘냄비 식’, ‘터뜨리기 식’, ‘선정적’인 보도를 특징으로 하며, 오로지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자극적이고 과장되며 추측이 섞인 보도를 단발적·근시안적으로 보도한다. 이런 언론들이 ‘떼거리처럼’ 몰려가 일시에 폭발적으로 쏟아내는 기사들은 독자들이 중요한 사안을 단순한 흥미 위주의 가십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박명진, 1989 : 김선남 외, 2003).

대한항공 일가 관련 기사 역시 그렇다. 방송과 언론은 마치 대한항공 일가가 천하의 몹쓸 짓을 저지른 죄인인 것처럼 몰아붙였지만 법적으로는 미미한 범죄임이 밝혀지고 있다. 대한항공 일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분명히 잘못해왔다. 그러나 먹잇감을 찾은 언론은 앞뒤 구분 없이 표적이 된 사람들의 생활을 갈가리 찢어놓아서 보도하고, 무슨 큰 사태가 터진 것처럼 부풀리고, 며칠간 온 나날에 같은 뉴스를 내보내 멋잇감이 된 사람들을 사회에서 매장하려는 듯하다. 언론은 대중의 호기심과 알 권리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말초적인 기사를 정당화한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카니발 폭행남에 대한 보도 역시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sup>4)</sup>를 통해 기사화된 사건이다. “칼치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어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이런 사람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라는 영상이 인터넷상에 알려지게 되고 언론이 다시 이 기사를 보도하게 되었다. SNS에서는 무차별적인 신상털기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오히려 언론이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가십성 기사를 쏟아냈다. 점점 언론의 정도를 잃고 대중을 흥분시키는 신변잡기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는 자신이 생산해내는 기사에 어떠한 뉴스 가치를 담아내느냐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평가받기 때문에, 이용자가 납득 할 만한 수준의 기사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언론의 존재 이유라는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

4) 한문철 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H5U89kvHrVxxS80xpoOydw>

문선아 등(2015)은 무분별한 정보 공개로 인해 취재원의 인권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부작용이 우려되는 보도,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용어로 사건을 왜곡·확대·과장한 보도를 선정적 보도로 보았다. 김희승(2016)은 윤리 규범에 근거하여 범죄 과정과 수범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한 보도 등을 선정적 보도로 보았다. 노성호·이기웅(1996)은 기사의 표현·사진이 자극적이거나, 흥미 위주의 보도를 선정적 보도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창호·정의철(2016)은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 보도를 연구하면서 확대·살해·유기·시신 수습·장례식의 세부적 묘사, 관련 사진·삽화 제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공개를 선정적 묘사 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임지원, 2019).

이와 같이 연구자마다 다양한 하위 개념을 통해 선정적 보도를 개념화시켜왔다. 정리해 보면, 국내 연구자들은 무분별한 정보 공개·자극적 표현 및 사진 사용·지나치게 자세한 묘사·혐오감을 주는 표현 사용·흥미 위주 보도 등을 선정적 보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임지원, 2019).

표 1. 선정적 보도에 관한 윤리 규범 및 신상털기 보도 사례

선정보도 하위개념	윤리규범	세부내용	신상털기 보도 사례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의 표현	조선일보 윤리 규범 가이드 라인 제12장 품격과 절제, 제2조 선정정보금지	⑧ 개인의 성적 정체성, 신체적특징, 육체적·정신적 질병 및 장애 등과 관련해 선입견을 담은 용어나 경멸적, 편파적,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 관련자의 신상이나, 평소 습관·기호·질병·주변인들의 평가 등과 같은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이경자, 1994; 김희승, 2012; 문선아 등, 2015; 한겨레, 2016.2.2.; 중앙일보, 2018.3.15.; 노컷뉴스, 2018.3.24)
	한겨레 범죄 수사 및 재판 관련 취재보도 시행세칙 7. 선정적 보도의 자제	① ... 호기심 충족 말고는 달리 공개할 이유가 없는 범죄 관련자의 사생활은 보도하지 않는다.	
사건 자체와 무관한 세부내용 제시	신문윤리 위원회 한국기자회 자살 보도 윤리강령	⑥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 본질과 관련 없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제는 여교사조차 못 믿겠네" 아들 문자 뒤져 보는 학부모들, 동아

선정보도 하위개념	윤리규범	세부내용	신상털기 보도 사례
	방송심의 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해설집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④ 범죄사건 보도 ... , 필요 이상의 구체적 묘사나 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는 자칫 범죄에 대한 무감각증 내지 모방범죄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보, 2017.8.31.;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7조 보도 기준	⑩ (선정보도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자극적 핵심어를 통해 독자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병기·이기용, 1993) ...“안산 토막 살인 용의자” 얼굴 공개 괜찮나요...가족, 전 애인 신상털기 2차 피해, 4년전 나주성폭행범 오보나기도 (한겨레, 2016.5.10.; 경향신문, 2016. 6. 27)
	신문윤리 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 폭행과정이나 수범, 피해 상황 내용들을 포함하여 보도하는 것(경향신문, 2017.9.7.)
음란/외설 (性 관련)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 라인 제12장 품격과 절제 제2조 선정보도 금지	① 성을 다루거나 표현할 때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품위를 잃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② 성과 관련된 위생, 질환 문제 등의 표현은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다룬다. ③ 신체 노출과 관련한 표현을 절제하고, 묘사할 경우에도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다. ④ 운동 경기, 시사회, 축제, 행사, 시위, 패션쇼 등의 신체노출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선정적, 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⑤ 외설·음란 사진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처럼 피해자를 들먹이며 사건을 명명하는 것(경향신문, 2018.2.14.) - 성관계나 성폭행 등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 하는 것(...여교사를 식당에서 2km 떨어진 초등학교 관사로 데려간 뒤 오후 11시 16분경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여교사 저항해 실패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다음 날인 22일 0시 15분경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잠이 든 여교사를 번갈아 성폭행했다.(동아일보, 2018.4.11.) - 성적으로 자극적인
	신문윤리 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④ (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	

선정보도 하위개념	윤리규범	세부내용	신상털기 보도 사례
	제3조 보도준칙	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 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	제목을 사용하는 것 ( 동아 일 보 , 2016.6.10.; 한겨레, 2016.6.9.)
과도한 감정표현	신문윤리 위원회 재난보도 준칙 제15조 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 등은 하지 않는다	- 피해자 가족의 과도한 감정을 포함하여 보도하는 것(동아일보, 201.8.22) - ‘무차별’, ‘애끓는 부정’과 같은 감정적 평가를 포함하여 보도하는 것(한겨레, 2011. 12. 27; 동아일보, 2012.8.22.)
	KBS 공정성 가이드 라인	③ (선정적 보도 지양) 사실과 관련 없는 주관적인 논평이나 감정 표현을 자제하며 ... .	

위의 <표 1>은 선정적 보도에 대한 윤리 규범과 선행연구들, 각종 윤리 규범에서의 선정성 조항을 참고하여 언론이 보도한 신상털기 관련 선정성 보도 사례를 각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위의 신상털기 보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언론은 신상털기 사건을 보도할 때 일정 부분 선정적 보도에 대한 윤리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진다.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의 표현은 물론이고, 사건 자체와 무관한 세부내용을 제시하거나 음란 또는 외설적인 표현, 그리고 과도한 감정표현 등이 실제 사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2005년 개똥녀 사건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급증한 ‘신상털기’ 관련 언론보도를 살펴보고자 했다. 국내 일간지 4개(경향신문, 한겨레,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신상털기 관련 보도의 특성은 언론사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고, 나아가 언론사별 신상털기 관련 보도는 선정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내용에 더 주목하여 보도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신상털기’ 관련 보도는 언론사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1-1. 언론사별 신상털기 기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1-2. 언론사별 보도주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1-3. 언론사별 신상털기 보도유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1-4. 언론사별 보도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은 신상털기 관련 언론 보도의 특성이 언론사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문기사의 장르 중 사설, 칼럼, 논단 등의 의견기사와 기획·연재 기사를 선정했다. 이는 의견기사와 기획·연재기사의 경우, 개인의 입장과 신문사별 특징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의견기사에는 ‘신상털기’에 대한 개인이나 단체의 소견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기획·연재기사에는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에 비해 언론사별 주제가 다양하므로 4개 신문의 기사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신상털기’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분석 대상인 4개 언론사가 주로 보도하는 주제와 보도유형, 보도태도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신상털기 사건의 개괄적인 흐름을 알아보고 신문사 간에 드러나는 견해차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문제 2. ‘신상털기’ 보도는 선정적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2-1. 언론사별 신상털기 행위에 대한 보도는 어떠한가?

2-2. 언론사별 선정성 정도는 언론보도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에서는 언론이 어떤 신상털기 사건에 대해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신상털기 사건이 주로 보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신상털기 행위에 대한 보도가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두어 보도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언론이 신상털기 사건의 내용에 따라 보이는 선정적인 보도행태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정적 보도 분석 유목을 통해 언론의 ‘신상털기’ 보도행태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어떤 기사들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지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및 기간

분석을 위해 동아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를 선정했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4개 일간지는 종합일간지로서 전국에 독자층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영향력과 신문사 간 이념적 대비가 비교적 확실하게 나뉘지는 대표적인 보수적 성향의 언론사와 진보적 성향의 언론사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수와 진보로 대표되는 언론사 간 신상털기 보도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기간은 ‘신상털기’의 대표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 개똥녀 사건’이 기사화된 2005년 6월 5일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말까지 약 15년 동안이다. 이 기간을 분석 기간으로 한 이유는 2005년 개똥녀 사건 이후 인터넷 및 스마트폰, 네트워크 기술이 급성장하였고, 이에 따라 미디어 환경 및 뉴스 이용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신상털기 기사’란 신상털기 사건 발생부터 유포 및 피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한 보도 기사로 가능한 일반인에 대한 신상털기 사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아이서퍼(EyeSufer) 4.0을 이용해 수집하였다. ‘신상털기’, ‘마녀사냥’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으며, 기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기사가 아닌 지면에 실린 기사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검색범위는 ‘제목+본문’으로 하였다. ‘신상털기’라는 단어가 들어있더라도 기사의 내용이 ‘신상털기’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약 15년 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신상털기’에 대한 기사를 모두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수집된 기사는 총 610건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개인의 신상털기에 대한 기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사 247개를 제외한 363개를 1차적으로 우선 선정하였다. 이후, 정치인 청문회와 관련한 신상털기 기사 또한 본 연구의 특성상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28건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총 39건의 신상털기 사건이 포함되었다. 39건의 사건 중 37건의 일반인에 대한 것이었고, 나머지 2건은 연예인에 관련한 신상털기 기사였다.

선정성 유목 중 그림이나 삽화가 포함된 기사는 언론사별 지면 보기 서비스를 통해 검색하여 그림이나 삽화가 포함된 기사를 다시 정리하였다. 지면 보기 서비스는 경향신문의 경우 2006년부터 제공하고 있고,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2010년 이후 제공하고 있었으며, 중앙일보의 경우 지면보기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해당 기사를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고 PDF 보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부 지면 보기 서비스를 통해 검색이 되지 않는 기사들은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와 대조하며 정리하였다.

또한, 코딩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24.0을 활용하였으며, 교차분석과 기술 통계분석을 활용하였다.



### 3) 신상털기 보도특성

#### (1) 보도주제

신상털기 보도주제는 보도주제의 항목들을 설정하기 위해 전체 기사의 30% 이상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사회적 공분, 계층 간 불평등 등의 유목을 도출하였다.

표 2. 신상털기에 대한 보도주제 관찰 사례

보도주제	핵심내용	관련 단어	보도 사례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인권 침해 마저 우려는 되는 사항을 다루는 기사	개인정보 유출 신상정보 사이버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과 SNS에는 ‘윤창중의 인턴녀’ ‘윤창중의 그녀’ 등의 제목으로 성추행 피해 여성의 이름과 사진이 급속히 유포됐다.(동아일보, 2013.5.13; 경향신문, 2013.5.13)</li> <li>- 실제로 지난달 인천 어린이집 원생 폭행 사건때는 폭행 교사 남편으로 잘못 알려진 한 시민이 휴대전화 ‘문자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동아일보, 2015.2.4.)</li> </ul>
사회적 공분	법적 혹은 도의적으로 부도덕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털기를 다루는 기사	개똥녀 막말녀 패륜녀 30대 여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대 여성이 지하철 안에서 ...옆 자리에 앉은 할머니에게 반말을 퍼붓는 동영상 이 유포되었고, 누리꾼들은 이 여성이 1995년생,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미니홈피를 찾아내는 등 ‘신상털기’에 나섰다(동아일보, 2010.12.31.)</li> <li>- 초등생 제자 피어... 여교사의 빛나간 욕망(동아일보, 2017.8.30)</li> </ul>
계층 간 불평등	계층 불만으로 생겨난 부정의에 대한 공개적	명품녀 루저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 후 김씨는 ‘4억원 명품녀’로 불리며 인터넷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김씨 부모의</li> </ul>

보도주제	핵심내용	관련단어	보도 사례
	모욕주거 등 사회적 불평등으로 신상털기를 문제를 다루는 기사	라면상무	<p>불법증여 의혹 등이 제기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경향신문, 2010. 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대기업 임원이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 폭행 사건이 무차별한 '신상털기'와 프라이버시 보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경향신문, 2013.4.22.)</li> <li>- ... 이 사건이 언급된 그 순간부터 인터넷에는 실명과 프로필, 가족관계, 사진까지 나돌았다(중앙일보, 2013.4.25)</li> </ul>

분석은 제목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신문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함축하고 정보의 비중을 가리는 잣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차배근 외, 2001). 제목만으로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다루어지는 전문(리드)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전문(리드)은 기사의 내용을 추려서 압축적으로 정리한 글이라는데 근거를 삼았다(강상현·채백, 2002). 한 기사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경우 기사의 제목과 리드를 고려하고, 기사에서 어떤 주제가 상대적으로 더 비중 있게 다루어졌는가를 기준으로 지배적인 주제를 결정하였다. 위의 <표 2>는 신상털기에 대한 보도주제 관찰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 (2) 보도유형

언론이 왜 신상털기 사건을 보도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신상털기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유형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근본적 문제 지적, 신상털기 문제 제기, 신상털기 정보제공으로 분류하였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신상털기로 인한 개인의 정보유출 등 사회적 범죄 가능성과 불합리한 인권 침해 관련 보도유형을 말하며, 근본적 문제 지적은 신상털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 등을 보도하는 기사를 말한다. 또한, 신상털기 문제 해결은 신상털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 사회 공통의 문제로서 사회적 이슈와 의제로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방안 등의 보도유형을 말하며, 신상털기 정

보제공은 신상털기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단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상털기 관련 통계자료, 그리고 신상털기와 관련된 관계 법령의 변화와 소개 등의 보도유형이다.

### (3) 보도태도

보도태도는 김경모와 김연정(2005)의 연구를 참조하여 분류하였다. 첫째, 긍정적 기사는 기사에서 신상털기를 당연시하거나 옹호하려는 의도가 표현된 기사, 둘째, 부정적 기사는 신상털기를 비판 또는 낮게 평가하거나 그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선이 나타나는 기사, 셋째, 중립적 기사는 신상털기에 대한 단순 사실과 객관적인 정보만 전달하는 기사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상털기에 대한 기사의 제목, 헤드라인, 그리고 기사 내용의 긍정과 부정을 고려하여 보도태도를 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상털기에 대한 기사 내용은 대부분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신상털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긍정 및 부정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사, 혹은 긍정과 부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분류하기 힘든 기사들은 중립적 기사로 분류하였다.

또한, 신상털기를 범죄처럼 인식하여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 제2, 제3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기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포함된 기사들은 부정적 기사로 분류하였다.

### 4) 신상털기 행위요소

신상털기 행위요소는 선행연구(김수나, 2014; 이경주, 2016)에서 중요하게 판단하는 개념들과 언론보도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익명성, 공분의 정도, 정의구현, 재미나 호기심 등의 신상털기 행위요소를 도출하였다.

익명성은 신상털기 행위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박정순(2004)은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이 결국 도덕적 구속력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 익명성이 높을수록 신상털기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고 익명성은 신상털기 행위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공분의 정도는 사건이 대중들이 느끼는 일종의 분노로 도의적 비난 가능성

이 크면 클수록 신상털기 행위는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본다. 정의구현은 사회적 비난 대상이 된 사람들을 찾아내 비난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단죄로서 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부정의 문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재미나 호기심은 신상털기를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2011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67%가 ‘신상털기’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상털기’의 이유로 ‘재미나 호기심 때문’이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신상털기 행위요소로 재미나 호기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5) 신상털기 관련 언론의 선정적 요소

언론이 어떤 신상털기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적 보도에 대한 윤리 규범과 선행연구들, 특히 임지원(2019)이 각종 윤리 규범에서의 선정성 조항을 정리하여 범주화한 선정성 유목, 그리고 각종 기사들을 참고하여 선정적 신상털기 보도를 판단하는 항목 총 14개를 재구성하였다.

표 3. 신상털기 선정적 보도 분석 유목

보도유목	세부내용
프라이버시 침해	·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성별, 나이, 직업, 학력 등을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신상털기가 일어난 원인이 모두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서술하였는가?
	· 호기심 충족을 위한 피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보도하였는가?
	· 신상털기를 범죄행위보다는 SNS이용자들이 내리는 정당한 처벌로 서술하였는가?
사건과 불필요한 세부내용	· 신상털기 및 사건의 내용과 무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하였는가?
	· 과거 유사 신상털기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였는가?
	· 신상털기 과정, 수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가?

보도유목	세부내용
음란/외설 (性 관련)	· 신상털기 사건과 관련한 사진, 삽화 등을 사용하였는가?
	· 음란한 느낌이 드는 사진을 사용하였는가?
	· 성관계나 성폭행 등 자극적 삽화를 사용하였는가?
	· 제목 또는 기사에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과도한 감정표현	·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피해자의 동작, 대사, 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술하였는가?
	· SNS 이용자들의 분노, 가족의 오열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는가?

첫째,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의 표현은 신상털기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와 공개할 이유가 없는 사생활, 개인의 특성 등 사건 자체와 무관한 세부 내용들을 보도함으로써 사람들의 흥미를 끈다는 점에서 선정주의의 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사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나 신상털기 수법,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보도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보도하는 항목들을 묶어 분류하였다.

셋째, 성(性)과 관련 항목들을 분류하였다. 성(性)과 관련된 항목들에서는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사진이나 표현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성적인 요소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선정적 보도행태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정표현에 대한 항목들을 분류하였다. 신상털기를 당해도 될 만큼의 분노와 감정, 특히 사람들의 오열 등을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나 기자의 개인적인 감정표현 등을 실어 보도하는 행위에 대한 항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보도행태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보도라는 점에서 선정적 보도행태로 볼 수 있다. 신상털기 선정적 보도 분석 유목에 따른 선정성 항목별 기사 예시는 <부록 15>로 정리하였다.

5) 언론이 보도한 신상털기 관련 기사의 선정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신상털기 기사의 내용이 선정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의 일부분을 해당 기사에서 발췌해 예시하였다. ‘음란한 느낌이 드는 사진 사용’, ‘성관계나 성폭행 등 자극적 삽화를 사용’ 한 항목에서는 그림이나 삽화에 대한 설명이 어렵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아 기사를 따로 예시하지 않았다.

6) 분석유목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신상털기’ 기사에 대한 보도특성, 신상털기 행위요소와 선정성 요소 등의 분석유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신상털기 분석유목 및 세부 내용

구분	분석 유목	세부내용
신상털기 보도특성	보도주제	1) 프라이버시 침해 2) 사회적 공분 3) 계층 간 불평등 4) 기타
	보도유형	1)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2) 근본적 문제 지적 3) 신상털기 문제 해결 방안 4) 정보 제공 5) 기타
	보도태도	1) 긍정적 2) 부정적 3) 중립적
신상털기 행위요소	익명성	1) 불특정 다수 2) 지인 3) 알 수 없음 4) 기타
	공분의 정도	1) 비난가능성 2) 사회적 형평성 3) 법적처벌가능성 4) 기타
	정의구현	1) 부정의에 대한 사회적 처벌 2) 공개 모욕주기 3) 잘못된 정보 바로 잡기 4) 기타
	재미나 호기심	1) 자기능력 과시 2) 개인정보보호 불인지 3) 단순 재미 4) 기타
선정성 요소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의 표현	1)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성별, 나이 직업, 학력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2) 신상털기가 일어난 원인이 모두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서술하였는가? 3)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 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보도하였는가? 4) 신상털기를 범죄 행위보다는 SNS 이용자들이 내리는 정당한 처벌로 부각하여 보도하였는가?
	사건 자체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5) 신상털기 및 기사 내용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하였는가? 6) 자극적 보도를 위해 과거 유사 신상털기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였는가? 7) 신상털기 과정, 수법 등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자극적으로 묘사하였는가? 8) 신상털기와 사건과 관련한 자극적인 삽화·사진 등의 자료들을 사용하였는가?
	음란/외설	9) 음란한 느낌이 드는 신체 부위 사진을 사용하였는가? 10) 성관계나 성폭행 등과 관련된 자극적 삽화를 사용하였는가? 11)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과도한 감정표현	12)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13) 피해자의 동작·대사·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술하였는가? 14) SNS 이용자들의 분노, 가족의 오열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는가?

7) 코더간 신뢰도

표 5. 분석유목 코더 간 신뢰도

문항	일치 코딩수 (M <sub>1</sub> )	불일치 코딩수	해당없음 코딩수 (M <sub>2</sub> )	코딩 총계	신뢰도(CR) 2(M <sub>1</sub> +M <sub>2</sub> )/ (N <sub>1</sub> +N <sub>2</sub> )
신상털기 보도주제	194	4	30	228	98.2
신상털기 보도유형	183	15	30	228	93.4
신상털기 보도태도	193	5	30	228	97.8
익명성	159	0	69	228	100.0
공분의 정도	149	10	69	228	95.6
정의구현	145	14	69	228	93.9
재미나 호기심	160	0	68	228	100.0
피해자 개인정보 확인 가능 표현	158	1	69	228	99.6
신상털기 원인이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서술 여부	157	2	69	228	99.1
호기심 충족 등의 이유로 신상 및 사생활 보도 여부	158	1	69	228	99.6
신상털기 행위를 정당한 처벌로 부각하여 기술후	157	2	69	228	99.1
사건의 내용과 관련 없는 호기심 유발 제목 사용 여부	159	0	69	228	100.0
과거 신상털기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후	159	0	69	228	100.0
신상털기 과정이나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지 여부	159	0	69	228	100.0
삽화나 사진 등의 사용 여부	159	0	69	228	100.0
음란한 느낌이 드는 사진 사용 여부	159	0	69	228	100.0
성관계나 성폭행과 관련한 삽화 사용 여부	159	0	69	228	100.0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 사용 여부	159	0	69	228	100.0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 사용 여부	157	2	69	228	99.1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확인 없이 서술하는지 여부	157	2	69	228	99.1
대중들의 분노, 피해자측의 슬픔 등의 보도 여부	152	7	69	228	96.9

분석에는 석사, 박사 각 1명씩 두 명이 참여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를 검증하

기 위해 전체 분석대상의 10%에 해당하는 28건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코더 간의 일치도를 사전에 측정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는 홀스티(Holsti)<sup>6)</sup> 공식을 이용해 검증했다. 코딩의 정확도를 위해 코드북을 만들고 선정성 코딩 유목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선정성 항목 14개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0.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분석원 간 신뢰계수는 Holsti 기법에서 권장하는 90% 이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코더 간의 신뢰도는 0.994로 위의 <표 5>와 같이 코더 간 신뢰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6) 홀스티(Holsti) 척도 : 일치도에 대한 백분율을 갖고 명목적 자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신뢰도= $2M/N_1 + N_2$  (M : 코더간 일치한 코딩 수,  $N_1, N_2$  : 1, 2번 코더가 코딩한 전체 수)



## IV. 연구결과

### 1. 신상털기 관련 언론사별 언론보도 특성

#### 1) 기사 유형

<표 6>은 년도별로 각 언론사들이 보도한 기사량을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5년과 2006년 자료가 없는 것은 아이서퍼 검색으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만으로 검색해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실제 ‘개똥녀’에 대한 보도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년도별 신상털기 보도 기사

구분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합계
2005년	0	0	0	0	0
2006년	0	0	0	0	0
2007년	0	1	0	0	1(0.4%)
2008년	0	1	0	0	1(0.4%)
2009년	3	0	0	0	3(1.3%)
2010년	8	1	0	0	9(4.0%)
2011년	14	4	12	7	37(16.2%)
2012년	10	9	1	7	27(11.8%)
2013년	18	14	5	13	50(21.9%)
2014년	12	8	7	10	37(16.2%)
2015년	4	6	2	3	15(6.6%)
2016년	6	2	5	7	20(8.8%)
2017년	4	1	1	4	10(4.4%)
2018년	5	4	3	3	15(6.6%)
2019년	0	3	0	0	3(1.3%)
합계	84(36.8%)	54(23.7%)	36(15.8%)	54(23.7%)	228(100.0%)

년도별로는 2010년을 기점으로 신상털기 기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기는 주로 ‘00녀’로 대표되는 4억 명품녀, 경희대 패륜녀, 루저녀, 된장녀,

국물녀 사건 등에 대한 기사와 30대 여교사 사건, 포스코라면 상무 사건, 고려대의대생 성추행 사건 등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신상털기가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화된 이유로도 분석된다. 또한,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SNS의 대중화로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가 쉬워졌고,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신상털기가 이루어지면서 각 언론사들이 보도 기사량도 증가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언론사별 신상털기 사건을 정리한 결과, 동아일보가 84개(3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앙일보가 54개(23.7%), 경향신문이 54개(23.7%), 한겨레가 36개(1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언론사별 신상털기 보도 사건

구분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합계
국물녀	2	3	1	2	8(3.5%)
막말녀	10	4	2	3	19(8.3%)
개똥녀	10	9	5	6	30(13.2%)
윤창중 인턴녀	2	0	1	1	4(1.8%)
김포맘카페	2	1	0	2	5(2.2%)
포스코라면상무	5	6	3	5	19(8.3%)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	12	4	6	9	31(13.6%)
강남패치	3	2	2	3	10(4.4%)
루저녀	4	1	1	2	8(3.5%)
한샘여직원	0	1	1	1	3(1.3%)
패륜녀	6	3	2	3	14(6.1%)
폭행녀	6	5	1	2	14(6.1%)
명품녀	15	11	7	9	42(18.4%)
부산여중생사건	0	0	0	1	1(0.4%)
13세 제자 성관계	7	4	4	5	20(8.8%)
합계	84(36.8%)	54(23.7%)	36(15.8%)	54(23.7%)	228(100.0%)

특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 명품녀 사건은 모두 42개(18.4%)로 신상털기가 단순한 재미나 호기심보다는 계층 간 불평등이나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 시스템

에 대한 불신, 공권력과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에 대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 4사가 보도한 신상털기 관련 사건 목록은 <부록 2>로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 4개 언론사들이 기사에서 한 번 이상 언급한 일반인에 대한 신상털기 사건 37건이고, 연예인에 대한 신상털기 사건 2건이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보도한 사건은 11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만 공통적으로 보도한 사건은 12건,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공통적으로 보도한 사건은 10건이었다.

## 2) 신상털기 보도주제

<표 8>에서는 언론사들이 신상털기 사건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170건(7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적 공분이 51건(20.0%), 계층 간 불평등은 7건(3.2%)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언론사별 신상털기 보도주제

구분	언론사									
	동아		중앙		한겨레		경향		합계	
	N	%	N	%	N	%	N	%	N	%
프라이버시 침해	55	65.5	45	83.3	31	86.1	39	72.2	170	76.8
사회적 공분	26	31.0	9	16.7	3	8.3	13	24.1	51	20.0
계층 간 불평등	3	3.6	0	0.0	2	5.6	2	3.7	7	3.2
전체	84	100.0	54	100.0	36	100.0	54	100.0	228	100.0

$\chi^2=11.485$ ,  $df=6$ ,  $p<0.05$

언론사별로는 동아일보의 경우 보도주제를 프라이버시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가 55건(6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상털기 행위 유발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가 26건(31.0%), 신상털기 행위 유발사건의 사회적 불평등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가 3건(3.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경우는 보도초점을 프라이버시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가 45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상털기 행위 유발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가 9건(16.7%) 순으로 나타났다. 신상털기 행위 유발사건의 사회적 불평등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한겨레의 경우 보도초점을 프라이버시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가 31건(8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상털기 행위 유발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가 3건(8.3%), 신상털기 행위 유발사건의 사회적 불평등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가 2건(5.6%) 순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의 경우는 보도초점을 프라이버시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가 39건(7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상털기 행위 유발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가 13건(24.1%), 신상털기 행위 유발사건의 사회적 불평등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가 2건(3.7%)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별 신상털기 보도주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언론 4사 모두 프라이버시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신상털기 사건이 개인의 정보유출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신상털기 보도초점과 관련하여 동아일보가 타 언론사들에 비하여 신상털기 행위 유발사건 그 자체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많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신상털기 보도유형

언론의 신상털기 보도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근본적 문제 지적, 신상털기 문제 해결 방안,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구분하였다. 신상털기 관련 기사가 실린 지면을 독립변수로 하고 신상털기 보도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신상털기 관련 기사가 실린 지면 가운데 기획기사는 신상털기 보도의 결론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6건(46.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상털기 유발사건의 근본 원인 지적이 5건(38.5%), 신상털기 문제 해결 방안이 1건(7.7%), 단순 정보제공이 1건(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언론사별 신상털기 관련 기사 보도유형

구분	언론사별 신상털기 관련 기사													
	기획		사설칼럼		오피니언		사회		경제		기타		합계	
	N	%	N	%	N	%	N	%	N	%	N	%	N	%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6	46.2	11	61.1	19	40.4	56	69.1	0	0	38	55.9	131	45.7
근본적 문제 지적	5	38.5	6	33.3	25	53.2	13	16.0	0	0	21	30.9	70	28.5
신상털기 문제해결방안	1	7.7	1	5.6	3	6.4	2	2.5	1	100	2	2.9	10	20.9
단순 정보제공	1	7.7	0	0	0	0	10	12.3	0	0	7	10.3	18	5.0
전체	13	100	18	100	47	100	82	100	1	100	68	100	228	100

$\chi^2=49.675$ ,  $df=15$ ,  $p<0.00$

언론 4사 모두 기획기사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경향신문의 경우 2013년 10월 4일 특집 기획기사 ‘감시 중독사회 감시 권력을 감시하라’를 통해 ‘한국 사회는 별거벗은 사회다.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개인 식별 번호인 주민등록번호는 고도로 정보화된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 실명제·휴대폰 가입시 본인 확인제와 결합해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만능열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자들은 SNS상에서 자신의 생각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노는 일상의 취향과 자신의 동선마저 공개하고 있다. 특정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한 신상털기는 이런 기반 위에서 가능 하다’고 하며 직접 신상털기 ‘해킹 시연’을 통해 어떻게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지 알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름과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이와 직업은 물론 온라인에 직접 노출한 적이 없는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신상털기는 과시욕·사회체제 불신이 낳은 ‘스트레스 배출구’로서 신상털기의 유행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욕구와 사회체제에 대한 신뢰 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진단한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경향신문 2012년 9월 14일 기획(13면) 기사는 “나쁜 짓 한 사람들에 사회적 처벌”로 사회에 대해 악영향을 끼친 사람들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도 하여 다분히 신상털기를 옹호하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다.

언론사의 논조를 결정하는 사설·칼럼에서는 신상털기 보도의 유형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11건(61.1%)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신상털기 유발사건의 근본

원인 지적 6건(33.3%), 신상털기 문제 해결 방안이 1건(5.6%) 순으로 나타났다. 사설·칼럼 역시 언론 4사 모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가장 많이 보도하여 언론사들 모두 신상털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겨레(2016. 6. 9, 사설·칼럼 31면), 중앙일보(2016. 6. 17, 사설·칼럼 34면)의 경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였는데 한겨레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게다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보호는커녕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사전공모’ 여부까지 포함해 이들의 파렴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짓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중히 조치해야 마땅하다. … 안전대책뿐 아니라 여교사들의 인권·교권 보장은 물론, 일부의 오도된 성 의식 문제까지 우리 사회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하여 인권 문제 및 성의식의 문제를 지적한 반면, 중앙일보는 “이번 성폭행 사건은 전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흉악범죄다. 그런 사건의 피해자 신상정보를 캐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한 것 자체가 성폭행 못지않은 비윤리적이고 반인륜적이며 파렴치한 중범죄다. 극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자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런 시도를 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희롱한 망나니짓이다. 그릇된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엉뚱한 사람을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 인터넷에서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벌이는 이러한 일탈 행동을 근절하려면 사이버 공간의 자율적인 자정 기능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하여 신상털기 사건의 폐해와 근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신상털기 사건에 대한 기획기사는 모두 13개로 비교적 많지 않고 게다가 한겨레와 동아일보의 경우 각각 단 1건의 기획기사만 있어 언론사 간 기사 추이의 비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또한, 사설·칼럼 역시 언론 4사 모두 합해 18개의 기사로 많지 않은 데다 경향신문의 경우 단 1건만의 사설·칼럼이 있고, 그것도 유명인에 대한 사설·칼럼이라 언론사의 논조를 비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 정치인 또는 연예인에 대한 신상털기 사설·칼럼이 9건으로 비교적 많았다.

오피니언은 신상털기 유발사건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는 기사가 25건(53.2%)으

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상털기 보도의 결론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19건(40.4%), 신상털기 문제 해결 방안이 3건(6.4%)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면의 경우에는 신상털기 보도의 결론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57건(69.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상털기 유발사건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는 기사가 13건(16.0%), 단순 정보제공이 10건(12.3%), 신상털기 문제 해결 방안이 2건(2.5%)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및 기타 부문의 기사들도 유사한 분포 경향을 나타냈다.

특징적인 것은 오피니언 부문의 기사에서 신상털기 유발사건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위의 <표 9>는 신상털기 관련 기사가 실린 지면에 따른 신상털기 보도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 4) 신상털기 보도태도

신상털기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상털기 관련 보도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신상털기 관련 보도 태도는 신상털기에 대한 칭찬이나 비판뿐만 아니라 기사가 긍정적 내용을 보도하는지, 아니면 부정적 내용을 보도하는지 고려해서 분석하였다. 언론사별 신상털기에 대해 어떠한 보도 태도를 보이는지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표 10. 언론사별 신상털기 보도태도

구분	언론사									
	동아		중앙		한겨레		경향		합계	
	N	%	N	%	N	%	N	%	N	%
부정적	60	71.4	48	88.9	29	80.6	45	83.3	182	81.1
중립적	24	28.6	6	11.1	7	19.4	9	16.7	46	19.0
전체	84	100.0	54	100.0	36	100.0	54	100.0	228	100.0

$\chi^2=6.856$ ,  $df=3$ ,  $p<0.05$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태도가 182건(81.1%)으로 높게 나타났고, 중립적인 태도는 46건(19.0%)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별로는 동아일보의 경우, 신상털기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기사가 60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앙일보가 48건(88.9%), 한겨레신문은 29건(80.6%), 경향신문은 45건(8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신상털기 행위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기사의 비율은 동아일보가 24건(28.6%)으로 가장 높았다.

## 2. 신상털기 관련 언론보도의 선정성 정도

### 1) 신상털기 행위요소

2005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보도된 신상털기 행위요소 중 익명성, 공분의 정도, 정의구현, 재미나 호기심과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를 정리한 결과는 아래의 <표 11>과 같다.

표 11. 언론사별 신상털기 행위 관련 보도

구 분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합계	통계값
		N(%)	N(%)	N(%)	N(%)	N(%)	
익명성	불특정 다수	60(71.4)	35(64.8)	28(77.8)	N(%)	123(70.2)	$\chi^2=5.73$ df=6 p > .05
	지인	7(8.4)	2(3.7)	1(2.8)	2(3.7)	12(5.3)	
	알 수 없음	0(0.0)	1(1.9)	0(0.0)	0(0.0)	1(0.4)	
	기타	17(20.2)	16(29.6)	7(19.4)	15(27.8)	55(24.1)	
	합계	84(100.0)	54(100.0)	36(100.0)	54(100.0)	228(100.0)	
공분의 정도	비난 가능성	51(60.7)	33(61.1)	20(55.6)	27(50.0)	131(57.5)	$\chi^2=9.84$ df=6 p < .05
	사회적형평성	4(4.8)	3(5.6)	4(11.1)	8(14.8)	19(8.3)	
	법적 처벌 가능성	12(14.3)	2(3.7)	5(13.9)	4(7.4)	23(10.1)	
	기타	17(20.2)	16(29.6)	7(19.4)	15(27.8)	55(24.1)	
	합계	84(100.0)	54(100.0)	36(100.0)	54(100.0)	228(100.0)	



정의 구현	부정의에 대한 사회적 처벌	30(35.7)	13(24.1)	13(36.1)	13(24.1)	69(30.3)	$\chi^2=5.96$ df=6 p > .05
	공개적 모욕주기	30(35.7)	23(42.6)	11(30.6)	22(40.7)	86(37.7)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7(8.4)	2(3.7)	5(13.9)	4(7.4)	18(7.9)	
	기타	17(20.2)	16(29.6)	7((19.4)	15(27.8)	55(24.1)	
	합계	84(100.0)	54(100.0)	36(100.0)	54(100.0)	228(100.0)	
재미나 호기심	자기 능력 과시	34(40.5)	12(22.2)	15(41.7)	19(35.2)	80(35.1)	$\chi^2=5.11$ df=6 p < .05
	개인정보 보호 불인지	22(26.2)	18(33.3)	11(30.6)	15(27.8)	66(28.9)	
	단순 재미	11(13.1)	8(14.9)	3(8.3)	5(9.2)	27(11.8)	
	기타	17(20.2)	16(29.6)	7(19.4)	15(27.8)	55(24.1)	
	합계	84(100.0)	54(100.0)	36(100.0)	54(100.0)	228(100.0)	

신상털기 행위의 주요 원인 중 익명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도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사건과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누리꾼 또는 네티즌)가 160건(70.2%)으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해자가 지인인 경우도 12건(5.3%)으로 나타나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도 적지 않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를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 의해 신상털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분의 정도와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131건(57.5%)으로 가장 비중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23건(10.1%), 사회적 형평성이 19건(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공분이 정도가 높고, 공분의 정도가 높을수록 신상털기 행위를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반면에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공분의 정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들에 대해 더 큰 공분을 느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신상털기 행위가 정의구현과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는 공개적 모욕주기가 86건(37.7%)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부정의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69건(30.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는 기사는 18건(7.9%)에 그쳤다. 이는 신상털기 행위가 가해자가 법의 처벌은 피했을지라도 도

덕적 처벌인 사회의 지탄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대 사회의 또 다른 처벌 방식의 하나로 보고 법의 처벌을 교묘히 빠져나간 사람들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 주기를 통해 행동에 대한 뉘우침과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신상털기 행위를 재미나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자기 능력 과시가 80건(35.1%)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상털기를 하고 있다는 기사도 66건(28.9%)으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단순 재미로 신상털기 행위를 한다는 내용은 27건(11.8%)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2) 언론사별 신상털기 선정성 행태

언론사들은 신상털기 보도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에 주목하여 보도하는지 다음의 <표 12>에서와 같이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표 12. 언론사별 신상털기 관련 보도의 선정성 항목 이용 현황

구분		동아	중앙	한겨레	경향	합계	통계값
		N(%)	N(%)	N(%)	N(%)	N(%)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의 표현	피해자 개인정보 확인 가능 표현	10(11.9)	13(24.1)	13(36.1)	14(25.9)	50(21.9)	$\chi^2=11.39$ df=3 p < .01
	신상털기가 피해자의 잘못된 것처럼 서술	13(15.5)	6(11.1)	4(11.1)	8(14.8)	31(13.6)	
	호기심 충족 등 이유로 신상, 사생활 보도	7(8.3)	3(5.6)	2(5.6)	3(5.6)	15(6.6)	
	신상털기 행위를 정당한 처벌로 부각 기술	10(11.9)	6(11.1)	4(11.1)	8(14.8)	28(12.3)	
	해당 없음	44(52.4)	26(48.1)	13(36.1)	21(38.9)	104(45.6)	
합계		84(100.0)	54(100.0)	36(100.0)	54(100.0)	228(100.0)	
사건 자체와 관련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사건과 관련 없는 호기심 유발 제목 사용	3(3.6)	0(0.0)	0(0.0)	1(3.35)	4(1.35)	$\chi^2=2.98$ df=3 p > .05
	과거 신상털기 사례와 비교하여 기술	2(2.4)	1(1.9)	0(0.0)	3(5.6)	6(2.6)	
	신상털기 과정이나 수법 등을 구체적 묘사	0(0.0)	0(0.0)	1(2.8)	1(3.35)	2(1.35)	
	해당 없음	79(94.0)	53(98.1)	35(97.2)	49(90.7)	216(94.7)	
	합계	84(100.0)	54(100.0)	36(100.0)	54(100.0)	228(100.0)	

음란/ 외설 (性관련)	삽화나 사진 등의 사용	0(0.0)	0(0.0)	0(0.0)	0(0.0)	0(0.0)	$\chi^2=3.20$ df=3 p > .05
	음란한 느낌이 드는 사진 사용	0(0.0)	0(0.0)	0(0.0)	0(0.0)	0(0.0)	
	성관계나 성폭행과 관련한 삽화 사용	0(0.0)	0(0.0)	0(0.0)	0(0.0)	0(0.0)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 사용	2(2.4)	0(0.0)	0(0.0)	0(0.0)	2(0.9)	
	해당 없음	82(97.6)	54(100.0)	36(100.0)	54(100.0)	26(99.1)	
합계	84(100.0)	54(100.0)	36(100.0)	54(100.0)	28(100.0)		
과도한 감정표현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 사용	2(2.4)	5(9.3)	1(2.7)	3(5.6)	11(4.8)	$\chi^2=1.69$ df=3 p > .05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확인 없이 서술	3(3.6)	1(1.8)	2(5.4)	2(3.7)	8(3.5)	
	대중들의 분노, 피해자 측의 슬픔 등의 보도	21(25.0)	11(20.4)	12(30.8)	15(27.8)	59(25.9)	
	해당 없음	58(69.0)	37(68.5)	22(61.1)	34(62.9)	150(65.8)	
	합계	84(100.0)	54(100.0)	36(100.0)	54(100.0)	28(100.0)	

먼저,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의 표현 관련 보도 비율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언론 4사 모두 “해당 없음”의 비율이 높았다. 이를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한겨레가 13건(36.1%)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향신문이 14건(25.9%), 중앙일보가 13건(24.1%), 동아일보가 10건(11.9%) 순으로 나타나 동아일보가 타 언론사들에 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확인 가능 표현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 < .01$ ).

항목별로 해당되는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본 경우, 한겨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확인 가능 표현”이 13건(36.1%)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신상털기 원인이 모두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서술 여부”, “신상털기 행위를 범죄행위라기보다 행위자들이 신상털기 대상자들에게 내리는 정당한 처벌로 부각 여부”에서는 10% 중반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경향신문 역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확인 가능 표현”이 14건(25.9%)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신상털기 원인이 모두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서술 여부”, “신상털기 행위를 범죄행위라기보다는 행위자들이 신상털기 대상자들에게 내리는 정당한 처벌로 부각 여부”에서는 10% 초중반의 비율을 보여 주었다.

중앙일보도 “피해자의 개인정보 확인 가능 표현” 항목에서 13건(24.1%)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신상털기 원인이 모두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서

술 여부”, “신상털기 행위를 범죄행위라기보다 행위자들이 신상털기 대상자들에게 내리는 정당한 처벌로 부각 여부”에서는 10% 초반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동아일보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확인 가능 표현”이 10건(11.9%)으로 언론 4사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들인 “신상털기 원인이 모두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서술 여부”, “신상털기 행위를 범죄행위라기보다는 행위자들이 신상털기 대상자들에게 내리는 정당한 처벌로 부각 여부”에서도 10% 초중반대의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그 밖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신상털기의 원인이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기술하는지에 대한 언론사별 비율과 신상털기 행위를 정당한 처벌로 기술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10% 초중반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호기심 충족 등의 이유로 신상 및 사생활을 보도하고 있는 행태는 언론사 전체적으로 5% 내외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언론사별 사건 자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세부내용에 대한 표현 비율을 살펴보면, 언론사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해당 없음의 비율이 각 언론사마다 90.0%를 상회하고 있는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언론사별 음란/외설(性관련) 표현 비율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유사한 분포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별 과도한 감정표현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언론사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대중들의 분노, 피해자 측의 슬픔 등을 보도하고 있는 비율이 25% 내외로 나타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 및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자의적 서술 등 기타 선정적인 보도행태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높은 비율을 나타낸 점이 특징이다.

이를 종합하면, 각 언론사들이 선정적 보도행태와 관련된 사항은 전체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대중들의 분노, 피해자 측의 슬픔 등에 대한 전달자로서 어느 정도의 감정표현의 창구 역할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 3) 언론사별 선정성 정도

다음의 <표 13>은 언론사별 선정성 보도 유목별로 100점을 기준으로 선정성 정도를 지수화하여 평균을 도출해보았다.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의 표현 부문에서는 한겨레가 20.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이어 경향신문이 15.8점, 중앙일보가 14.9점, 동아일보가 10.1점으로 나타나 한겨레신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13. 언론사별 선정성 보도 유목 점수

구분	언론사	선정성 점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의 표현	동아일보(n=84)	10.1
	중앙일보(n=54)	14.9
	한겨레(n=36)	20.9
	경향신문(n=54)	15.8
사건 자체와 관련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동아일보(n=84)	6.7
	중앙일보(n=54)	4.8
	한겨레(n=36)	6.1
	경향신문(n=54)	7.8
음란/외설 (性 관련)	동아일보(n=84)	4.4
	중앙일보(n=54)	3.7
	한겨레(n=36)	4.6
	경향신문(n=54)	4.6
과도한 감정표현	동아일보(n=84)	10.3
	중앙일보(n=54)	10.5
	한겨레(n=36)	13.9
	경향신문(n=54)	9.3

사건 자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부문에서는 모든 언론이 매우 미미한 선정성 점수를 나타냈고, 기사의 자극적 기술 부문에서도 한겨레신문 4.6점, 경향신문 4.6점, 동아일보 4.4점, 중앙일보 3.7점으로 한겨레신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음란/외설(性 관련)은 언론사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도 낮은 수준이었다. 과도한 감정표현과 관련해서는 한겨레가 13.9점, 중앙일보가 10.5점, 동아일보가 10.3점, 경향신문이 9.3으로 나타나 과도한 감정표현에서도 한겨레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언론사별 선정성 항목 비교에서는

한겨레신문이 타 언론에 비해 선정적 표현을 다소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위하여 <표 14>에서는 언론사별 선정성 유목점수를 언론사별로 선정성 유목 점수를 도출해보았다.

표 14. 언론사별 선정성 항목 점수

선정적 신상털기 보도 항목		언론사	점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의 표현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성별, 나이, 직업, 학력 등을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동아일보(n=84)	11.9
		중앙일보(n=54)	24.1
		한겨레(n=36)	36.1
		경향신문(n=54)	25.9
	호기심 충족을 위한 피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보도하였는가?	동아일보(n=84)	8.3
		중앙일보(n=54)	5.6
		한겨레(n=36)	5.6
		경향신문(n=54)	5.6
	신상털기가 일어난 원인이 모두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서술하였는가?	동아일보(n=84)	15.5
		중앙일보(n=54)	11.1
		한겨레(n=36)	16.7
		경향신문(n=54)	14.8
신상털기를 범죄행위보다는 SNS이용자들이 내리는 정당한 처벌로 서술하였는가?	동아일보(n=84)	11.9	
	중앙일보(n=54)	11.1	
	한겨레(n=36)	11.1	
	경향신문(n=54)	14.8	
사건 자체와 관련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신상털기 및 사건의 내용과 무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하였는가?	동아일보(n=84)	3.6
		중앙일보(n=54)	0.0
		한겨레(n=36)	0.0
		경향신문(n=54)	1.9
	과거 유사 신상털기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였는가?	동아일보(n=84)	2.4
		중앙일보(n=54)	1.9
		한겨레(n=36)	0.0
		경향신문(n=54)	5.6
	신상털기 과정, 수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가?	동아일보(n=84)	0.0
		중앙일보(n=54)	0.0
		한겨레(n=36)	2.8
		경향신문(n=54)	1.9

선정적 신상털기 보도 항목		언론사	점수
음란/외설 (性 관련)	신상털기 사건과 관련한 사진, 삽화 등을 사용하였는가?	동아일보(n=84)	13.1
		중앙일보(n=54)	11.1
		한겨레(n=36)	13.9
		경향신문(n=54)	13.8
	음란한 느낌이 드는 사진을 사용하였는가?	동아일보(n=84)	0.0
		중앙일보(n=54)	0.0
		한겨레(n=36)	0.0
		경향신문(n=54)	0.0
	성관계나 성폭행 등 자극적 삽화를 사용하였는가?	동아일보(n=84)	0.0
		중앙일보(n=54)	0.0
		한겨레(n=36)	0.0
		경향신문(n=54)	0.0
제목 또는 기사에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동아일보(n=84)	2.4	
	중앙일보(n=54)	0.0	
	한겨레(n=36)	0.0	
	경향신문(n=54)	0.0	
과도한 감정표현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동아일보(n=84)	2.4
		중앙일보(n=54)	9.3
		한겨레(n=36)	2.8
		경향신문(n=54)	5.6
	피해자의 동작, 대사, 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술하였는가?	동아일보(n=84)	3.6
		중앙일보(n=54)	1.9
		한겨레(n=36)	5.6
		경향신문(n=54)	1.9
	SNS 이용자들의 분노, 가족의 오열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는가?	동아일보(n=84)	25.0
		중앙일보(n=54)	20.4
		한겨레(n=36)	33.3
		경향신문(n=54)	20.4

우선 피해자의 개인정보 확인 가능성 표현 여부(첫 번째 항목)에서는 동아일보가 11.9점으로 타 언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나타냈고, 같은 항목에서 한겨레신문은 36.1점으로 현저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신상털기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성을 놓고 보았을 때, 동아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행태가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의 신상털기 행위의 원인이 신상털기 피해자의 원초적 부

정의 행위에 대한 업보라는 식의 표현은 중앙일보가 11.1점으로 다소 낮았고, 나머지 언론은 15.0점 내외의 점수로 유사한 점수를 나타냈다. 세 번째 항목의 호기심 충족 목적의 신상털기 피해자 사생활 노출과 관련된 표현에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지만 동아일보가 8.3점으로 타 언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항목의 신상털기 행위를 범죄행위라기보다는 대중이 내리는 정당한 처벌로서 표현하고 있는 부문에서는 경향신문이 14.8점으로 11.0점 내외의 타 언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열두 번째 항목의 기사에서 기자의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표현 여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낮았지만, 중앙일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9.3점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항목의 신상털기 행위 유발사건에 대한 대중과 피해자의 분노와 오열 등에 관한 표현 부문에서는 동아일보 25.0점, 중앙일보 20.4점, 한겨레신문 33.3점, 경향신문 20.4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기타 항목에서는 아주 미미하거나 낮은 수준의 항목 점수를 나타냈다.

표 15. 언론사별 선정성 전체 평균 점수

신상털기 보도 내용	언론사	순위	점수
선정성 전체 평균	동아일보(n=84)	3	7.3
	중앙일보(n=54)	4	7.1
	한겨레(n=36)	1	9.5
	경향신문(n=54)	2	8.2

언론사별 선정성 항목 전체에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진보 언론인 한겨레신문이 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의 <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사별 평균 점수를 보고 선정성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진보적 신문이라 할 수 있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에 비해 선정성 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이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보다 오히려 더 선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언론의 전반적 선정성 행태

표 16. 선정성 항목별 평균 점수

순번	선정성 신상털기 보도 항목	평균(S.E.)
1	·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성별, 나이, 직업, 학력 등을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0.29(±0.45)
2	· 신상털기가 일어난 원인이 모두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서술하였는가?	0.18(±0.38)
3	· 호기심 충족을 위한 피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보도 하였는가?	0.09(±0.28)
4	· 신상털기를 범죄행위보다는 SNS이용자들이 내리는 정당한 처벌로 서술하였는가?	0.16(±0.37)
5	· 신상털기 및 사건의 내용과 무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하였는가?	0.02(±0.15)
6	· 과거 유사 신상털기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였는가?	0.03(±0.18)
7	· 신상털기 과정, 수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가?	0.01(±0.11)
8	· 신상털기 사건과 관련한 사진, 삽화 등을 사용하였는가?	0.19(±0.30)
9	· 음란한 느낌이 드는 사진을 사용하였는가?	0.00
10	· 성관계나 성폭행 등 자극적 삽화를 사용하였는가?	0.00
11	· 제목 또는 기사에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0.11(±0.11)
12	·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0.06(±0.24)
13	· 피해자의 동작, 대사, 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술하였는가?	0.04(±0.21)
14	· SNS 이용자의 분노, 가족의 오열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는가?	0.34(±0.48)

위의 <표 16>은 언론사별 선정성 항목별 평균 점수를 정리한 것이다. 선정성 항목은 Y(해당)=1, N(해당되지않음)=0으로 코딩하였고, 평균값은 다음의 범위를 가진다( $0 \leq \text{평균값} \leq 1$ ). 1과 0으로 코딩한 후, 항목별 합계를 항목별 응답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항목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14번 문항인 “신상털기 유발 원인 사건에 대한 분노, 피해자의 오열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는가?”가 0.34로 가장 높은 선정성 점수를 나타냈고, 그 뒤를 이어 1번 문항인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성별, 나이, 직업, 학력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는

가?”가 0.29로 높았으며, 8번 문항인 “신상털기 사건과 관련한 사진, 삽화 등을 사용하였는가?”가 0.19로 세 번째로 높았으며, 2번 문항인 “신상털기가 일어난 원인이 모두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서술하였는가?”가 0.18로 네 번째로 높았고, 4번 문항인 “신상털기를 범죄 행위보다는 신상털기 가해자들이 내리는 정당한 처벌로 서술하였는가?”가 0.16으로 다섯 번째로 높았으며, 11번 문항인 “제목 또는 기사에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가?”가 0.11로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 문항들은 낮거나 미미한 수준의 선정성 점수를 나타냈다.

선정성 항목별 평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제목 또는 기사에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신상털기가 일어난 원인이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 부정의에 대한 가해자들에게 내리는 단죄보다는 오히려 신상털기 사건에 대한 분노, 오열 등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더 높은 선정성 점수를 보였다.

## V. 요약 및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이 연구에서는 신상털기 관련 보도가 언론사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선정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신상털기 기사에 대한 분석과 보도주제, 보도유형, 보도태도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기본적인 선정적 보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각종 언론 규범과 신상털기 관련 여러 논문들을 참고하여 기존에 체계화되어 있지 않던 신상털기 사건에 대한 내용적 차원의 선정적 보도를 4가지 유목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유목에 3~4개의 항목을 두어 총 14개의 항목으로 선정적 신상털기 보도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상털기 내용을 여러 분석 유목을 두어 신상털기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각 기사마다 선정성 항목별로 Y 또는 N으로 하여 코딩하였다. 2005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신상털기 관련 기사 228개에 대해 신상털기 내용과 선정성 정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이를 토대로 첫째, 언론사 간 신상털기 관련 보도는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상털기 사건을 보도한 기사량을 살펴보면 동아일보가 84개(36.8%)로 제일 많았고, 이어 중앙일보가 54개(23.7%), 경향신문이 54개(23.7%), 한겨레 36개(15.8%)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준 명품녀 사건은 전체 42개(18.4%) 기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신상털기가 단순한 재미나 호기심보다는 계층 간 불평등이나 사회체제에 대한 불만, 시스템에 대한 불신, 공권력과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에 대한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0개 이상의 기사가 보도된 사건들을 봤을 때 대부분은 법적 처벌 가능성보다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건들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며, 특히 포스코라면 상무 사건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사회고위층들의 비뚤어진 모습에 많이 분노하고 따라서 신상털기도 더욱 극심했다고 보여진다.

년도별로는 2010년을 기점으로 신상털기 기사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는 30대 여교사 사건, 포스코라면 상무 사건,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등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신상털기가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화된 이유로도 분석된다. 뿐만아니라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SNS의 대중화로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가 그만큼 쉬워졌고, 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언론사들이 보도 기사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도주제 및 보도유형은 언론 4사는 모두 프라이버시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신상털기 행위 유발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 신상털기 행위 유발사건의 사회적 불평등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사 순으로 나타났다.

신상털기 관련 기사가 실린 지면 가운데 기획기사는 신상털기 보도주제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46.2%로 나타났고, 언론사의 논조를 결정하는 사설·칼럼은 신상털기 보도주제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51.1%로 역시 높게 나타난 반면, 오피니언은 신상털기 보도주제를 신상털기 유발사건의 근본 원인 지적이 53.2%, 사회기사는 신상털기 보도주제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69.1%로 높게 나타나 오피니언 부문의 기사에서 신상털기 유발사건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비율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언론사 4사 모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주요 보도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신상털기 보도유형 역시 신상털기 보도주제와 마찬가지로 언론 4사 모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57.0%로 가장 두드러진 보도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상털기의 가장 큰 문제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꼽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의 신상털기 보도태도를 보면 신상털기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 방향 역시 신상털기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기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상털기 행위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신문기사에서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지적하는 기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정적인 신문기사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표하는 기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 특징적이다.

셋째, ‘신상털기’ 보도는 선정적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다. 신상털기 사건에 대해 가장 선정성이 높게 나온 항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보다는 오히려 신상털기 사건에 대한 분노, 피해자의 오열 등을 그대로 보도하는 항목이었다. 이는 SNS 이용자들이 신상털기 사건에 대한 공분의 정도가 신상털기 행위를 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여지며, 공적인 분노, 피해자의 오열, 감정 등에 호소하는 보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선정적 보도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높은 선정성 항목은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항목으로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성별, 나이, 직업, 학력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언론보도이다. 신상털기 사건 당사자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대한 보도는 기존의 선정적 보도의 문제점 말고도 그들의 가족 및 지인, 또는 제3의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연구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 연구는 그동안 단순한 사회현상으로 이해를 해 온 신상털기 사건 보도를 내용적 차원에서 정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신상털기를 선정성의 문제로 접근하고 신상털기 사건들을 어떻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지 언론윤리 규범들과 여러 논문들을 참고하여 4개의 하위 개념을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 이렇게 구성된 선정성 개념을 통해 언론이 선정적 신상털기 사건 관련 보도를 세밀하게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신상털기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신상털기 사건이 언론의 선정성과 연관하여 연구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특히 15년간의 신상털기 관련 언론 보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언론이 전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선정적 보도행태를 가장 많이 보이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이 연구는 언론이 신상털기 사건 보도에 대한 선정적 보도행태의 유형과 그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셋째, SNS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시대를 맞으면서 언론의 역할 측면에서 언론

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뉴스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실(Fact)이 제대로 확인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꽤 있고, 뉴스를 접하는 창구가 인터넷 포털이나 SNS 망으로 변하면서 뉴스 공급원이 난립은 물론 언론이 가진 사실 전달보다는 관심을 끌고자 하는 선정주의를 추구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일부 극성 누리꾼들이 특정 연예인이나 물의를 일으킨 일반인들을 상대로 신상정보를 파악해 공개했다면,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SNS의 발달로 이런 신상정보가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가리지 않고 일상화되고 있다. 누구든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볼 수 있고,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를 가지고 있다.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인 ‘신상털기’가 이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신상털기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신상털기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점이다. 따라서 많은 부분이 범죄 보도의 선정성 관련 논문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신상털기’란 키워드만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신상털기 사건을 모두 수집할 수 없었던 점도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이서퍼 검색어를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으로 한정해서 검색하다 보니 개별 사건에 대한 사례의 수집이 어려웠다. 그래서 2005년 ‘개똥녀’ 사건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털기로는 검색이 되지 않았다. 개별사건을 키워드로 넣고 검색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기간은 신상털기 대표적 사건인 ‘개똥녀’ 사건이 있었던 2005년부터 2019년 6월 말까지로 해서 신상털기 사건의 통시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으나 기사의 내용과 건수만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분석 유목들 역시 신상털기 내용으로 구성하였다고는 하나 온전히 신상털기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하며, 연구자가 알 수 있는 신상털기 내용은 기사화된 내용에 한정되었다.

셋째, 신상털기 선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었던 선정성 분석 유목 조작적 정

의들의 선정성을 확인하는 데서 그리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찾기가 힘들었다. 신상털기라는 사회문제를 다소 부정적 사회현상으로 전제한 후 선정적 항목을 찾다 보니 기사의 성격상 파악이 불가능한 내용까지 선정적 항목이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그런 성급함이 신상털기와 관련한 선정성 보도에 대한 분석 유목과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 연구가 많이 부족하지만 차후 보다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항목과 범주를 가지고 좋은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인에 대한 신상털기 기사를 중심으로 기사의 내용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상털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심리적 원인들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지 못한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넷째, 인터넷이나 SNS에서 먼저 시작된 의제가 어떻게 공중의 의제가 되고, 언론이 왜 이런 SNS상의 사건들을 보도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했으나 어떤 사건이 시작된 직후부터 언론 보도가 된 시점까지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이용자 그룹을 조사해야 하는 한계 등으로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내용과 결론은 참고하여 보다 발전된 범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학술 논문 및 단행본

#### 1) 국내

- 강진숙(2016). 길 위의 인문학: 원도심을 걷다-진해. 답사를 마시고. <로컬리티의 인문학>, 제52권, 11-12.
- 고재열(2011). 대안미디어 발달과정에서 파생된 역효과에 대한 고찰.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제1차 정보인권 세미나>, 79-83.
- 구본영(2012). 포털뉴스의 언론성 논란과 법적·윤리적 책임성 제고 방안. <관훈저널>, 통권 124호, 27-35.
- 김경모·김연정(2005). 일간지의 여성 인물 보도방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9호, 7-41
- 김경원(2000).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익명성이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도연(2013). <사회갈등 보도의 선정성이 뉴스 품질 및 현실 지각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남·장해순·정현욱(2003). 스포츠신문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3권 1호, 33-68.
- 김세중·정용국(2014). TV 뉴스의 선정성이 정서, 기억, 뉴스 평가 및 갈등 지각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제9권 3호, 118-130.
- 김세중(2016). <언론 보도의 선정성과 시청자의 감각추구성향이 뉴스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나(2014). <‘신상털기’ 및 루머성 댓글에 대한 인식 및 전달행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옥조(2004). 범죄 보도와 언론윤리: 만두소 사건과 연쇄살인 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3권 제1호, 175-224.
- 김유석(2006). <인터넷 공간의 ‘집합적 적의 표출’: Q 방법론의 적용>. 고려대학



- 교 대학원 언론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창섭(2010).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한 공연예술 마케팅 효과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승(2016). 잔혹, 엽기, 선정성에 노출된 범죄보도 실태와 원인. <관훈저널>, 2016년 봄호(통권 138호), 63-69.
- 김훈순(2004). 한국 언론의 젠더 프레임: 범죄 뉴스와 여성.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7권, 63-91.
- 나종연(2010). 사용확산모형을 적용한 소비자의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1권 2호, 443-472.
- 노성호·이기웅(1996). 한국언론의 범죄 보도 관행.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96-08, 7-191.
- 류승하(2005).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그 대응방안 고찰 : 익명성의 역기능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선아·김봉근·강진숙(2015). 성폭력 범죄 보도 태도에 대한 근거 이론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9-6호, 37-66
- 박기목·김광재(2014). 방송시장의 경쟁구조와 뉴스 콘텐츠 품질: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영상 뉴스 비교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12호, 706-722.
- 박솔(2018). <온라인신문 선정성 심의 현황 및 심의 담당자 인식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정순(2004). 익명성의 문제와 도덕 규범의 구속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진우(2011). 선정적 보도, 이대로 좋은가? 최근의 주요 사례들에 대한 진단. <관훈저널>, 통권 119호, 90-96
- 박허식(1986). <신문의 선정주의와 사회변동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백신정(2011). <인터넷 이용자들의 온라인 익명성 신뢰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변인정·정용국(2012). 성범죄 보도의 선정성과 음란물 노출이 성 관련 감정, 인지,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통권 제7-3, 36-68.
- 서이종·손준우(2011).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신상털기' 현상의 사

- 회학적 고찰, <2011년 제1차 정보인권 세미나> (3-42쪽).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서이중·손준우(2011). “신상털기” 현상과 배태된 프라이버시: 일상화된 정보 프로파일링과 공사의 경계변동.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8권 4호, 49-87.
- 서배원(2018). 선정정보 : 독자 관심 끌려다 ‘나쁜 언론’의 늪에 빠질수도. <신문과 방송> 통권 572호
- 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19호, 70-129
- 양진웅·김경호(2006, 6월). <포털 사이트 뉴스섹션의 선정성에 관한 연구 : 다음과 네이버 뉴스탑(News-top)에 노출된 연예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원옥연(2009). <SNS 웹사이트에 대한 실증 연구: 품질 요인, 사용자 만족, 지속적 사용 의도, 구전 의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상미·김미량 (2011). 사이버 폭력의 원인에 대한 구조모델의 제시와 검증,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14권 1호, 23-33.
- 유홍식(2003). 디지털 미디어시대의 방송저널리즘 윤리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도의 선정성 폭력성과 디지털 영상 조작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통권 제56호, 61-87.
- 윤영철(2000).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속의 민주주의. <한국방송학보>, 14(2), 109-150
- 윤영철(2007). 방송 저널리즘 프로그램 진행자의 의견 개입에 관한 연구: <KBC 뉴스 9>, <생방송 시사투나잇>, <추적 60분> 의 비교분석. <언론정보연구>, 44권 1호, 37-64
- 이경자(1994). 94 대형사건과 상업주의적 보도 경쟁의 문제점: 과장 또는 축소하는 이중구조적 ‘냄비’ 저널리즘. <저널리즘 비평>, 제14권, 23-29.
- 이경주(2016). <사이버공간에서 고등학생들의 ‘신상털기’에 관한 연구: 오프라인 비행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근우(2012). 우리나라 범죄 보도의 문제점, <가천 법학>, 제5권 제3호, 137-162.
- 이상국(2007).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 친구의 청소년비행에의 영향: 청소년패널 자료의 분석. <한국 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159-181.
- 이성식(2005).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 청소년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 청소년연구>, 16권 1호, 77-107.

- 이성식(2013).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의 불법 행동과 그 원인으로 사회  
자본과 그 쟁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비교. <형사정책연구>, 24(2), 261-290.
- 이성식(2018). 신상털기 실증연구에서 원인 및 기회증폭과 통제요인들의 통합작  
용 모색. <형사정책>, 제30권 제54호.
- 이양환(2012). 소셜미디어를 통한 개인 신상정보 침해와 언론 보도의 영향. <언  
론중재>, 제32권 제3호, 38-51.
- 이재진(2004). 연예인 관련 언론소송에서 나타난 한 미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  
한 비교연구. <한국방송학보>, 18권 3호, 7-55.
- 이재진(2014). 온라인신문의 선정성과 자율 규제. <온라인신문 자율심의 세미나>  
(2-14쪽). 서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 이진규(2011). ‘신상털기’ 현상에 대한 이해. <2011년 제1차 정보인권 세미나>  
(69-77쪽).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창호·정의철(2016).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종  
특별자치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양준(2010). 공공사업 관련 사회적 갈등 보도에 대한 뉴스 프레임 분석: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제49권, 57-80.
- 임지원(2019). <언론은 어떤 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가? : 살인범죄를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태섭 (1993). 텔레비전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담론분석 연구. <언론과 사회>,  
제1권, 67-109.
- 정수영(2019). 언론자유의 패러다임 전환과 ‘편집권’의 독립. <황해문화>, 통권  
103호, 310-321.
- 정용국(2012). 성범죄를 ‘이야깃거리’로 취급하는 언론, 시나브로 신뢰 잃는다 : 성  
범죄 보도에서 점검해볼 세 가지 이슈, <신문과 방송> (24-27쪽).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조동기·오영석·조희경(2001).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 집합행동>.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영·박창신(2009). 온라인 뉴스이용에 관한 연구: 조선닷컴 뉴스의 연성화 및  
제목 선정성과 조회 수간의 상관관계.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7권 1호, 31-53.

- 최예나(2016), <SNS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와 자기 노출 간의 관련성 : 정보 공개의 인지된 가치와 나르시시즘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재(2007). 게이트인가 스캔들인가: 신정아 보도가 남긴 것들, <관훈저널> (141-148쪽). 서울: 관훈클럽
- 최재영(2016). <온라인 커뮤니티 유형에 따른 익명성 인식 차이가 악성 댓글 게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향섭(2013). '신상털기'로 본 한국의 인터넷 문화. <KISO 저널>, 제11호, 48-52.
- 하승태·박범길·이정교(2010). 한국 지상파 텔레비전에 나타난 선정성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4권 1호, 73-112.
- 한국방송진흥원(2000). <텔레비전 보도 프로그램의 언어 연구~방송 3사 저녁 종합 뉴스 언어 분석> (현안연구 01-10). 서울: 한국방송진흥원.
- 한국여성민우회(2008).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어린이 대상 성범죄 보도의 문제점: 지상파 3사 메인 뉴스에 나타난 안양어린이납치살해 사건 보도태도 분석」. 서울: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
- 한국윤리위원회(2009). 인터넷이용자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2011). 2011년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2018). 2018년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2) 국외

- Grabe, M. E.(1996), Tabloid and Television Newsmagazine Crime Story: Crime lessons and reaffirmation of social class distinctions,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26-946.
- Grabe, M., Zhou, S., Barnett, B.(2001), Explicating sensationalism in television news: Content and the bells and whistles of form, *Journal of Broadcasting&Electronic Media* 45(4), 635-655
- Kiesler, S. J. Siegel and T.W. McGuire.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10), 1123-1134.
- Kleemans, M., & Hendriks Vettehen, P.G.J. (2009). Sensationalism in television news: A review. In R.P. Konig, P.W.M. Nelissen & F.J.M. Huysmans (Eds.), *Meaningful media: Communication research o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226-243. Nijmegen, the Netherlands: Tandem Felix
- Postmes, T. and Spears, R.(1998). Deindividuation and anti-normative behavior: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3, 238-259.
- Suler. J.(2004), The Online Disinhibition Effect, *CyberPsychology & Behavior*. 7(3), 321-326.
- Tuchman, G.(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 Zimbardo, P.G.(1969) The Human Choice: Individuation, Reason, and Order Versus Deindividuation, Impulse, and Chao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7, 237-307,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3) 단행본

- 강상현·채백(1996).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한나래.
- 박명진(1989). <비판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이론>. 서울: 나남.
- 박주현(2014). <인터넷 저널리즘에서 의제의 문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Tuchman, G.(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박흥수 (역) (1995). <메이킹 뉴스: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연구>. 서울: 나남.
- 백옥인(2013). <네트워크 사회문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차배근·오진환·정진석·이광재·임준수·신인섭(2001). <우리 신문 100년>. 서울: 현암사.

## 2. 인터넷판 뉴스 및 자료

강준만(2014). 황색저널리즘은 어떻게 탄생했나. <주제가 있는 미국사>: 네이버 캐스트. URL: <http://blog.naver.com/lsb8666/10190656949>

MBN(2015, 1, 15).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상털었는데...누구세요?

URL: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news\\_seq\\_no=2169226](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news_seq_no=2169226)

경향신문(2014. 08. 07 21:31) [이봉수의 미디어 속 이야기] 세계언론사에 남을 ‘추악한 특종’과 선정 보도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0807213148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408072131485)

노컷뉴스, (2004. 12. 10), “언론유죄” 집단 성폭행 사건 기자의 고백.

URL: <https://newsnaver.com/main/read.htm?mode=LSD&mid=sec&sid1=102&cid=079&aid=00001792>

뉴스웨이(2019. 08..16), 제주카니발 폭행‘비난 폭주’...가해자 신상털기까지.

URL: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081608462502244>

머니투데이(2017. 08. 29), “잘 생겼나 보자”...초등학생 피해자에 도 넘은 악플.

UR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82913462781695&VR>

미디어오늘(2004. 12. 12), ‘밀양 성폭행 사건’ 인터넷 빅뱅.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85>

시사저널(2012. 08. 19), <밀양 고교생 44명에 당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 8년 지나도 ‘악몽’은 그대로>

URL: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563>

이코노믹리뷰(2014. 08. 14) [손영동의 Cyber 안전 빛과 그림자] 윤일병 가해자 ‘신상털기’ 공분인가, 테러인가.

URL: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260>

주간동아(2010, 12, 27) 어디서 뭐 하든 톡톡 하면 다 나와! 포털 카페, 블로그 등에 개인정보 무차별 노출...보이스피싱·사기 2차 범죄 악용 우려.

URL: <http://weekly.donga.com/3/all/11/91270/1>

세계일보(2011, 5, 23). 송지선 아나운서 자살 - SNS시대 비극인가?.

URL: <http://www.segye.com/newsView/20110523004936>

주간동아(2015, 1, 12). 갑의 횡포인가 마녀사냥인가.

URL: <http://weekly.donga.com/3/all/11/98726/1>

조선일보(2018, 11, 24). <채선당 · 240번 버스 · 이수역 사건...‘인터넷 마녀사냥’ 왜 반복되나.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3/2018112308103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3/2018112308103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

주간동아(2010, 12, 27). 숨소리까지 마녀 사냥을 어찌나.

URL: <http://weekly.donga.com/List/3/all/11/91266/1>

주간동아(2010, 12, 27). 이런 디지털 유산 저승까지 따라간다.

URL: <http://weekly.donga.com/3/all/11/91272/1>

주간동아(2010, 12, 27) 커지고 세지는 ‘TGIF 부메랑’ 트위터·구글 등 통해 실시간 노출...나도 모르는 사이 발가벗겨진 사생활.

URL: <http://weekly.donga.com/3/all/11/91268/1>

중앙일보(2019. 06. 17). 조롱에 신상털기까지...‘잔혹 살인’ 고유정 향한 어긋난 분노.

URL: <https://news.joins.com/article/23498228>

연합뉴스(2019. 07. 01), 신상털기에 헛소문까지....고유정 사건에 들끓었던 6월.

URL: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1052500056>



## 부록1 - 기사 코딩

### 1. 기사 기본정보

#### ◇. 신문사

- 1) 조선일보 2) 중앙일보 3) 한겨레 4) 경향신문

#### ◇. 보도 날짜 : 20( )년 ( )월 ( )일

#### ◇. 보도된 지면 : ( )면

#### ◇. 신상털기 사건 발생 날짜 : ( )년 ( )월 ( )일

#### ◇. 신상털기 보도 주제

- 1) 프라이버시 침해 ( ) 2) 사회적 공분 ( )  
3) 계층 간 불평등 ( ) 4) 기타

#### ◇. 신상털기 보도유형

- 1)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 2) 근본적 문제 지적 ( )  
3) 신상털기 문제 해결 방안 ( ) 4) 정보 제공 ( )  
5) 기타

#### ◇. 신상털기 보도 태도

- 1) 긍정적 ( ) 2) 부정적 ( ) 3) 중립적 ( )

### 2. 신상털기 행위

#### ◇. 익명성

- 1) 불특정 다수 2) 지인 3) 알 수 없음 4) 기타

#### ◇. 공분의 정도

- 1) 비난 가능성 2) 사회적 형평성 3) 법적 처벌 가능성 4) 기타

#### ◇. 정의구현

- 1) 부정의에 대한 사회적 처벌 2) 공개적 모욕주기 3)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4) 기타

#### ◇. 재미나 호기심

- 1) 자기능력과시 2) 개인정보 보호 불인지 3) 단순 재미 4) 기타

### 3. 기사 선정성

####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의 표현 제시]

- ◇.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성별, 나이 직업, 학력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그렇다(Y)	그렇지 않다(N)
0	1

- ◇. 신상털기가 일어난 원인이 모두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서술하였는가?
- ◇. 호기심 충족 말고는 보도할 이유가 없는 사건 관련자의 신상이나 사생활(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보도하였는가?
- ◇. 신상털기를 범죄행위보다는 SNS 이용자들이 내리는 정당한 처벌로 부각하여 보도하였는가?

#### [사건 자체와 관련된 불필요한 세부내용 제시]

- ◇. 신상털기 및 기사 내용의 본질과는 관련 없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하였는가?
- ◇. 자극적 보도를 위해 과거 유사 신상털기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였는가?
- ◇. 신상털기 과정, 수법 등 사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자극적으로 묘사하였는가?
- ◇. 신상털기와 사건과 관련한 자극적인 삽화·사진 등의 자료들을 사용하였는가?

#### [음란/외설]

- ◇. 음란한 느낌이 드는 신체 부위 사진을 사용하였는가?
- ◇. 성관계나 성폭행 등과 관련된 자극적 삽화를 사용하였는가?
- ◇.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과도한 감정표현]

- ◇.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 ◇. 피해자의 동작·대사·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술하였는가?
- ◇. SNS 이용자들의 분노, 가족의 오열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는가?

## 부록 2 신상털기 선정성 항목별 기사 예시

선정적 보도 항목	기사 예시
<p>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성별, 나이, 직업, 학력 등을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 2010. 10. 21 사회 12면, “신상털기? 막장털기!…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남편-자녀 정보까지 공개” … ‘서울 강서구’와 ‘중학교’, ‘35세 여교사’ 등 서너 가지 키워드에서 출발한 누리꾼들은 이날 12시경 30대 여교사 A씨 개인 미니홈피를 찾아내 공개.</li> <li>- 경향신문 2013. 10. 4 기획 8면 “이름·폰번호·e메일 주소만 봤는데… ‘강남역 근처 201호 싱글녀죠?’” … “서울 강남역 부근 건물 201호에 혼자 사는 xx대 졸업한 24세 싱글 여성이시죠?”</li> </ul>
<p>신상털기가 일어난 원인이 모두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서술하였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 2013. 7. 24 사회 12면, “女大 커피점에 자주 가면 변태 男?” … 이대 대학원생 폐북에 조롱 글-사진… ‘여대 커피점에 자주 간다고 변태라는 건 무슨 논리냐’… ‘사진 속 남녀, 동의는 받고 얼굴 공개하신 건가요’ 라며 정씨를 비난했다.</li> </ul>
<p>호기심 충족을 위한 피해자의 신상이나 사생활(평소 습관, 기호, 질병,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보도 하였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 2014. 2. 3 종합 3면, “30분 만에… 애인 이름-동생 학력까지 콕-” …정씨의 군 복무 부대, 아르바이트 경력, 남동생이 한 사립대 공대에 2010년 합격…</li> </ul>
<p>신상털기를 범죄행위보다는 SNS 이용자들이 내리는 정당한 처벌로 서술하였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 2010. 12. 31 사회 13면 “이번엔 ‘지하철 반말녀’ 시끌” ‘할머니에 막말’ 동영상 퍼져 … 20대 여성이 지하철 안에서 막말이 퍼붓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이를 본 누리꾼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 누리꾼들은 이 여성이 1985년생,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고 미니홈피를 찾아내는 등 ‘신상털기’에 나섰다.</li> <li>- 경향신문 2012.9.14 기획 13면 “나쁜 짓 한 사람들에 사회적 처벌” … ‘신상털기’를 하는 누리꾼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들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신상이 털리는 사람은 거의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책감 같은 건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li> </ul>
<p>신상털기 및 사건의 내용과 무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하였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 2017. 8. 31 사회 12면, “이제는 여교사조차 못 믿겠네” 아들 문자 뒤져보는 학부모들 …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하명선 씨(44, 여)는 30일 아들의 스마트폰을 뒤져 봤다. 제자를 꼬드겨 성관계를 맺은 교사가 피해 학생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사진을 전송했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다.</li> </ul>

선정적 보도 항목	기사 예시
과거 유사 신상털기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 2009. 11. 12 사회 3면, “디지털 마녀사냥 ‘신상털기’” … 신상털기는 2005년 ‘개똥녀 사건’때부터 본격화 됐다.… 개똥녀… 군삼녀… 조두순… 학교-직장에 비난 전화… 관련 없는 사람까지 ‘매장’</li> <li>- 경향신문 2013. 1. 11 오피니언 30면 “디지털 프라이버시” … 놀이하듯이 ‘막말녀’ ‘폭행남’이라는 식으로 이름 붙이는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근래에는 현직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li> </ul>
신상털기 과정, 수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일보 2012.10.31 14면, “휴대전화 번호 알아 내는 데 10초” ‘회원들의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초도 안 걸렸다.</li> <li>- 경향신문 2012. 9. 14 기획 13면 “사진만 있어도 취미, 성격 주루룩” … 이름을 포털사이트 네이트 검색창에 기입하자 미니홈피가 나왔다. 이곳에서 그의 나이와 학과, 학번 등의 정보가 쏟아졌다.</li> </ul>
신상털기 사건과 관련한 사진, 삽화 등을 사용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 2018. 8. 6 사회 12면, “‘불륜男’ 지목돼 속수무책 유포… 생사람 잡는 ‘SNS 지라시’”</li> <li>- 동아일보 2018. 11. 16 사회 14면, “무차별 퍼져나간 신상 정보… 자살 부른 ‘소곤소곤 뒷담화’ ”</li> <li>- 경향신문 2012. 9. 14 기획 13면 “신상털기는 과시욕·사회체제 불신이 낳은 ‘스트레스 배출구’”</li> </ul>
음란한 느낌이 드는 사진을 사용하였는가?	-
성관계나 성폭행 등 자극적 삽화를 사용하였는가?	-
제목 또는 기사에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일보 2016. 8. 29, 사회 12면 “30대 女강사, 13세 제자와 성관계... 합의했어도 성적학대”</li> <li>- 동아일보 2017. 8. 30 사회 12면, “초등생 제자 피어 … 여교사의 빛나간 욕망</li> <li>- 동아일보 2018. 11. 3 사회 8면 “더 은밀하게 더 집요하게... 온라인 ‘집단따돌림’ 광풍”</li> <li>- 경향신문 2017. 8. 30 사회 10면 “‘초등생 강간 혐의’ 30대 여교사 구속”</li> </ul>
감정적 평가나 주관적 느낌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9. 7 사회 10면, “‘부산 여중생 폭행’ 목격 시민들 신고 안 했다.” … 주변 어른들 도움 손길 없어… 경찰 순찰차도 그냥 지나쳐… ‘혹시 신고만 있었다면 폭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li> </ul>

선정적 보도 항목	기사 예시
	<p>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든다'고 말했다.</p> <p>- 동아일보 2016. 6. 6 사회 10면, “뭉쓸짓 한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 학교 어떻게 보내나”... 주민들 “얼굴들 수도 없어” 뒤숭숭...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짓을 저지른 어른들 탓에 아이들 까지 피해를 볼까 봐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p>
<p>피해자의 동작, 대사, 심리적 상태 등을 소설처럼 서술하였는가?</p>	<p>- 경향신문 2018. 10. 16, 사회 12면 “학대 의심’ 신상털린 어린이집 보육교사 극단적 선택” 경찰 조사 전 ‘맘 카페 마녀사냥’... 유서에 “미안하다. 그런 의도는 없었다. 원망을 안고 가겠다”</p> <p>- 동아일보 2014. 2. 3 종합 4면, “신상유출 스트레스에 내 인생 망쳐” ... A씨는 기자에게 “누리꾼들이 내 인생을 망쳐놨다”며 “미쳐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A씨는 “왜곡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면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견잡을 수 없이 더 많은 내 신상이 공개 됐다”며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떨린다”고 말했다.</p>
<p>SNS 이용자들의 분노, 가족의 오열 등을 그대로 보도하였는가?</p>	<p>- 동아일보 2012. 8. 22, 12면 애끓는 父情 “구속 당해서라도 내 딸 죽게한 범인 만나겠다” “이놈 얼굴이나 보아야겠다....피자 가게 기물을 부숴 현행범으로 유치장에 들어가서라도 만나야겠다” ... 죄를 녹일듯한 아버지의 분노는 이제 회한과 탄식으로 바뀌고 있다.</p>

### 부록 3 - 신상털기 보도 사건

신상털기 사례	발생 년도	신상털기 주요내용
개똥녀 사건	2005	지하철에 애완견을 데리고 탑승한 한 여성이 자신의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신상정보공개 및 수많은 악플에 시달린 사건
군삼녀 사건	2007	군삼녀란 현 군복무 기간이 너무 짧다며 3년은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해 남성 누리꾼의 분노를 산 사건
루저녀 사건	2009	미녀들의 수다라는 방송에서 키 180cm가 되지 않는 남자는 루저라고 발언한 여자 사건
서울의 30대 여교사 사건	2010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의 30대 중학교 여교사 사건
경희대 패륜녀	2010	어머니뻘인 청소부 아줌마에게 욕두문자를 남발한 사건
4억 명품녀 사건	2010	방송에 나와 부모의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원대라고 말하여 네티즌들로부터 공분을 샀던 사건
고양이 폭행녀	2010	술에 취해 귀가 하던 여자가 옆집 고양이를 발로 차고 폭행하다가 창밖으로 내던져 죽인 사건
지하철 패륜녀 사건	2010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할머니에게 막말을 퍼붓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미니홈피 공개 등 신상털기가 된 사건
터미널 진상녀	2011	20대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사건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2011	고대 의대 재학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 이 사건과 무관한 학생이 피의자로 오인돼 실명공개
지하철 막말남 사건	2011	20대 청년이 지하철에서 80대 노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동영상으로 재학중인 대학교와 학년 등 신상이 털린 사건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2011	같은 반 친구들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다 자살한 사건. 가해 학생들이 아닌 학생의 신상정보가 가해자 인 것처럼 무차별 유포.
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	2011	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대전 여고생 자살 사건. 담임 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동명이인의 사진 유포
산부인과 우유 주사 사망 사건	2012	서울 한 산부인과에서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등 약물을 투약받은 뒤 숨진 사망 사건의 피해자 이름과 사진이 공개
택시 막말녀	2012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50대 택시운전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올리면서 신상이 털린 사건
런던 올림픽 오심 사건	2012	런던올림픽 펜싱 경기에서 오심을 저지른 심판과 독일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선수의 누드사진까지 퍼나른 사건
막말 간호사 사건	2012	한 여성 간호사가 트위터에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3초면 숨지게 할 수 있다’는 막말을 남겨 신상털기로 사건
성추문 검사 여자 사진 유출 사건	2012	성추문 과문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여성 피의자의 사진이 검찰에서 유출됐다는 의혹과 함께 조사받은 여성이 신상이 털린 사건
서산 피자가게 사장 사건	2012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여대생이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 이후 피자가게 사장 및 아내의 사진 공개
된장 국물녀 사건 (채전당 임산부 사건)	2012	화상을 입은 아이의 부모가 아이에게 국물을 쏟았다고 했지만 사건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국물녀로 몰아간 사건.
인턴 여대생 성추행 사건	2013	대통령의 방미 외교를 수행했던 윤창중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주미 한국대사관의 인턴여대생을 성추행했던 사건
이대 대학원생 남성 조롱 사건	2013	이화여대 스타벅스 변태남이라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휴대전화번호, 남자친구, 다니는 교회까지 인터넷에 퍼진 사건

신상털기 사례	발생 년도	신상털기 주요내용
포스코‘라면 상무’사건	2013	항공기 승무원을 폭행했던 포스코 임원의 실명과 프로필, 가족 관계, 사진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직한 사건.
유민 아빠 주치의 신상털기 시도	2014	세월호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의 주치의인 이보라씨의 노조 경력과 당적을 조회하는 공문을 보내 신상털기를 시도한 사건
분신 자살 방조자 사건	2014	서울역 고가도로 아래를 걸어가다가 분신 장면을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이 모습을 촬영했다 자살 방조자로 몰린 사건
지하철 9호선 도촬남	2015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 녹화버튼 실수로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과 신상이 유포되었으며 비난 댓글로 피해를 입은 사건
켓맘 사건	2015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돌보던 중년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 범인은 10세 미만의 초등생임에도 마구잡이로 신상이 털린 사건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2015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교사의 사진, 카톡 아이디 등을 공개한 사건
명문대 강의실 성행위 사건	2016	사립명문대에서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듯한 영상이 유출. SNS등에 신상이 털려 잘못된 소문이 퍼진 사건
강남패치 사건	2016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을 폭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강남패치’로 일반인에 대한 무분별한 개인 신상이 유포
안양마트 폭행 사건	2016	안양의 한 마트에서 한 남성이 동료 여직원 때리는 영상이 유포되었고, 폭행 당사자의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된 사건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사건	2016	신안군 섬마을에서 학부모 3명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여교사의 사진이 유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7	2017년 여중생의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SNS에 공개되면서 가해 학생들의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털린 사건
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 사건	2017	경남의 한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건
한샘 여직원 성폭행사건	2017	한샘의 신입 여직원 A씨가 상사에게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한 사건. 회유와 사건 축소 시도 등으로 논란이 가중된 사건.
240번 버스 사건	2017	서울 240번 버스 운전기사가 어린아이 혼자만 먼저 내려 뒷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생긴 사건.
고유정 사건	2019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고유정의 출신 초등학교는 물론 현 남편의 사생활과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 부록 4 - 연예인 관련 신상털기 사건

신상털기 사례	발생 년도	신상털기 주요내용
타진요 사건	2005	가수 타블로의 학력에 대한 의심으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모임’으로 타블로에게 근거없는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 여론몰이를 하고 타블로가 학력을 증명하였음에도 끊임없이 위조라고 주장하며 타블로를 괴롭힌 사건
가수 손호영 자살기도 사건	2013	가수 손호영씨가 자살한 여자친구의 장례식을 치르던 하루만에 자살을 시도했다 구조된 사건으로 악플과 허위사실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한 사건으로 여자친구의 사진이라며 전혀 관련이 없는 한 20대 여성의 사진이 퍼져 2차 피해가 생긴 사건.

## Abstract

Although it is said that doxing is a work that is suitable to receive the criticism socially and a work that is worthy of receiving a punishment legally, by sharing the fact that had not been confirmed with such a reason only through an SNS and, furthermore, by distorting the fact by processing and editing it, the situation is that in which the damages have been serious, including making the well-intentioned victims, making even the normal, social life, too, impossible, and the others of the like. Regarding the media, too, while reporting on such incidents, reporting without the confirmation of the facts looks like the media prefer the sensational reports that emphasize on the interest and the stimulation rather than the fair reporting that is based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When a specific doxing incident takes place, the media, sometimes, pour out the sensational reports that are centered on the interests. Actually, the problem of the deepening of the breaking news competition and the stimulating article writing competition between the press agencies has been raised continuously. And, during this process, because of the commercial reason, the new and stimulating contents for attracting the interest of the consumers get added, and such competitions get around to spreading out quickly. There can occur the victims due to such reports on the doxing and the well-intentioned victims, including the invasions of the private lives, the libels, etc. regarding their families or the surrounding people or the third parties who are absolutely new. Although it is not a fact that there are no similar case examples in the foreign countries, too, there is a need to try analyzing the cause regarding whether the media report the doxing incidents as the very Korean phenomena basically.

For this, this research had taken a look at what difference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reports that were related to the doxing incidents that had been reported from 2005 until the end of June 2019 by 4 representative, general dailies in Korea had been shown by press agency. And it had taken a look at what differences the reports related to the doxing by press agency had in terms of the sensationalism aspe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extent of the sensationalism of the doxing, by referring to the codes of ethics of the various media, the sensationalism on the content dimension had been



organized through 4 lower-ranking concepts. And, by having 3 to 4 detailed sensational reporting items by each lower-ranking concept, with a total of 14 items, the standard for the sensational doxing had been prepared. And the doxing details and the sensationalism extents had been recorded through such a method.

As a result, regarding the 4 press agencies, all of the articles that adjusted the focus on the invasion of privacy captured a considerably high relative weight. And, regarding the type of the report, too, because, in the same way as the topic of report of doxing, in relation to all of the 4 press agencies, because the worry about the invasion of privacy had been appearing as the most prominent type of reporting, it was able to confirm that, as the biggest problem of doxing, the worry about the invasion of privacy had been pointed out. Regarding the doxing reporting, in relation to the item of which the sensationalism came out to be the highest with regard to the sensationalism aspect, rather than the worry regarding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instead, the item of the reporting of the anger, the sobbing of the victim, etc. regarding a doxing incident just the way they were had been the highest.

It appeared that, as a special characteristic of doxing, mostly, the articles by the press agencies report regarding the negative aspect of doxing. And it had been difficult to discover a tone that was different from the differences regarding the doxing incidents by press agency. Except, it appeared that all of the press agencies that had been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had been reporting on the worry of the invasion of the privacy as the cause of the doxing. And it appeared that they had been reporting by carving in relief the seriousness of the invasion of privacy and the libel regarding the victims, the families, and the third parties due to the doxing.

This research has the meaning with regard to the point that it had taken a look at the reporting on the doxing incidents that had been understood as the simple, social phenomena until now on the content level, the point that it became possible to observe the sensationalistic reporting behavior of the media by carrying out an empirical research based on this, and the point that it had taken a look at the details of the doxing as a cause of the sensationalistic reporting of the doxing.

Keywords: Sensationalism, doxing, invasion of privacy, and libel.